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731-6113

서울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2740호 2006. 12. 21.(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06-1857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06-1859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3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제2006-1858호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
-------------	---------------------------------------	---

◆고 시

제2006- 431호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9
제2006- 432호,438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9
제2006- 4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2
제2006- 434호,4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13
제2006- 436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	15
제2006- 437호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	16
제2006- 440호	강일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16
제2006- 441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37
제2006- 443호	재정비축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축진계획 결정	40

◆공 고

제2006-181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41
제2006-182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42
제2006-1833호,18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43
제2006-18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44
제2006-18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44
제2006-185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45
제2006-1853호	측량업 신규등록	46
제2006-1855호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위탁협약 해지	46
제2006-1860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46
제2006-1861호	어린이미술마당 위탁운영자 선정	77
제2006-1868호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77

◆구 고 시

제2006- 58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종로구)	80
제2006- 76호	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 실시계획 변경(중구)	100
제2006- 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중구)	102
제2006- 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용산구)	103
제2006- 64호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경미한사항)(용산구)	103
제2006- 124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동대문구)	104
제2006- 126호	도시계획사업(배봉산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동대문구)	109
제2006- 128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동대문구)	112
제2006- 85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중랑구)	113

제2006- 85호	미아삼거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강북구)	113
제2006- 86호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강북구)	114
제2006- 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강북구)	115
제2006- 54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변경인가(노원구)	119
제2006-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서대문구)	128
제2006-1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녹지)실시계획(변경)인가(서대문구)	128
제2006- 56호	초원연립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양천구)	129
제2006-1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강서구)	129
제2006- 8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구로구)	132
제2006- 83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구로구)	134
제2006- 88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강남구)	135
◆ 구공고		
제2006-652호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구역 지정(종로구)	136
제2006-550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용산구)	136
제2006-551호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가제한(용산구)	137
제2006-8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성북구)	138
제2006-568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에따른서류공람(노원구)	141
제2006-624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사완료 (목동중심축 제2-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양천구)	141
제2006-971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송파구)	142
◆ 사업소고시		
제2006-205호, 206호, 207호, 208호, 210호	하천점용허가(한강시민공원사업소)	143
제2006-209호	하천점용허가 승인(한강시민공원사업소)	144
◆ 사업소공고		
제2006- 30호	소방시설업등록(구로소방서)	145
제2006- 31호	방염처리업등록(구로소방서)	145
제2006- 17호	방염처리업 등록(영등포소방서)	145
제2006- 60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145
◆ 기 타		
제2006-265호, 266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7
제2006-267호, 26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7
◆ 정 정	149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7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
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등의 개정(제명변경 : 「공
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
한 법률」)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소요
실비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현재 조례에 규
정된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 및 “월세 거
래가액 산정 방식” 등이 법령에 직접 규정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
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 등에 대해서
는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요율표에 명시하도록 함
- 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보장액의 한도를
정함
 -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
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 : 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
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다.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신설함

-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
요되는 실비의 경우 : 중개대상물에 대
한 확인·설명이 끝난 때
-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
요되는 실비의 경우 : 계약금 등을 반
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
료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
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
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
을 삭제함

마.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
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
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에 대하
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
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
여 서울특별시(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
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청 별관 2동 토지관리과 전화 :
02)3707-8053, FAX : 02)3707-8069,
E-mail : land@seoul.go.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4. 별첨 :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 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
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수수료)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중개수수료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를 마친 때로 한다.

제3조(실비)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별표 1]

중개수수료 한도(제2조제1항관련)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비 고

1.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 (1) 6억원 이상인 매매·교환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1천분의 9
- (2) 3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1천분의 8

나. 중개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실비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금 등의 반환보장에 따른 실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받는 중개업무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주택에 대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실비의 한도(제3조제1항관련)

구 분	산 출 내 역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나.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대행비 : 발급·열람 건당 1천원
2.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금융기관 등에의 예치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다. 제 증명서·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라. 교통비·숙박비 등의 여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9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설립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록 신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거래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의 개정(2006.6.9 시행)으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농수산물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추가됨에 따라 이를 이 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앞으로는 농수산물 품목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거나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 거래물량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그 매수판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 규칙에 추가하되, 그 품목과 기간을 도매시장 거래여건 및 유통실태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도록 함.
 - (2)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방식이 아닌 정가 또는 수의 매매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하여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 (3)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수탁된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는 품목에 다음의 것을 추가함.
 -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것

<p>(나) 농산물 산지별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받은 것</p> <p>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 및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농수산유통과장, 전화 : 3707-9394, 팩스 : 3707-9399, 전자우편 : kkj33@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p> <p>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 <p>4. 별첨 :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p>
---	--

<별 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고) ①<생략> ②중도매인은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한 때에는 <u>지체없이</u>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①<현행과 같음> ②.....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매매방법) ①법인은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③<생략> <신설>	제42조(매매방법) ①..... ②~③<현행과 같음> ④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거래여건 및 유통실태 등을 감안하여 품목과 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과 경매시작 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도매시장별 거래여건 및 유통실태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③<생략>	제44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7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3.<생략>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5. <생략> <신설>	제47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1.~3.<현행과 같음> 4.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5.<현행과 같음> 6. 「 친환경 농업육성법 」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산물 7. 산지 안전성검사 적합판정 농산물 ②<현행과 같음>
②<생략> <신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8호
 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2006.8.
 18)에 맞추어 우리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를 공급대상자로 추가하는 한편, 상위법
 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
 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를 추가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
 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
 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기획과장, 전화
 02-3707-8597, 팩스 02-3707-8229,
 E-mail : ebears123@seoul.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
 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1호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건설부고시 제428호(1979.11.22)로 도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서울시특별시고시 제
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결정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4호(2006.2.2)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중구 회현동2가 18-1
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구역변경 결정하고 같
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회현구역 제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지정 조서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결정 구분	사업의 구분	지구	위 치	시행면적 (㎡)			비고
				계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기 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2-3	회현동2가 18-1일대	6,876.10	5,298.80	1,577.30	
변 경	변 경 없 음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사항 없음

3) 건축시설계획

구분	위 치	대지면적 (㎡)	건폐율 (%)	연면적(㎡) (용적율%)	높이(m) 층수(지상/지하)	주된 용도	
기 정	회현구역 제2-3지구	5,298.8	56이하	83,000이하 (990이하)	110 이하 (33/7)	주거	
변 경	회현구역 제2-3지구	변경없음					

4) 기타 변경사항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확폭 : 1.5m → 3.0m
- 건물내 보행자 통로계획 :
B=6m → B=3m
- 단지내 건축물간 동간거리 :
10m → 8.5m

다. 변경사유

- 대지간 이격거리 확폭에 따른 건축계획
(공공보행통로)변경

라.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상권부활반(☎
2171-2685)과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시
관리과(☎ 2260-1763)에 도서를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2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
계획 변경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로 도시계
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1-267호(2001.8.11)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736호(2006.5.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6-268(2006.8.3)호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7-1번지 일대의 명일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7-1번지외2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사업의명칭 : 명일근린공원 조성
- 3)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6,981㎡

-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4)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청
 - 사업대행자 주소및성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 강동구청장
 - 5)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7.12.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08.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과 ☎ 6321-4186) 및 강동구(공원녹지과 ☎ 480-1395)
-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당초		3필지		27,925	6,981						
변경		3필지		6,981	6,981						
당초	1	산47	임야	7,934	5,300	(주)금산 코퍼레이션	강동구 성내동 378-2	국 용산세무서	용산구 한강로 3가 65-342	근저당권	
변경	1	산47-1	임야	5,300	5,300	(주)금산 코퍼레이션	강동구 성내동 378-2	국 용산세무서	용산구 한강로 3가 65-342	근저당권	
당초	2	산46	임야	19,510	1,200	(주)금산 코퍼레이션	강동구 성내동 378-2	국 용산세무서	용산구 한강로 3가 65-342	근저당권	
변경	2	산46-6	임야	1,200	1,200	(주)금산 코퍼레이션	강동구 성내동 378-2	국 용산세무서	용산구 한강로 3가 65-342	근저당권	
당초	3	152-2	임야	481	481	박상학	서초구 염곡동 141-8				
변경	3	152-2	답	481	481	박상학	서초구 염곡동 141-8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건축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구분	번호	소재지	건물면적				소유자		세대주	세대원	용도	구조
			계	무허가			성명	주소				
				주택	창고	화장실						
당초	1	산47	39	39			주동국	상일동 산47	주동국	주승규	주택	판넬/블럭
변경	1	산47-1	변경없음									
당초	2	산47	75	75			신순애	상일동 산47	신순애	주현정	주택	판넬/블럭
변경	2	산47-1	75	75			신순애	상일동 산47	신순애	주현정	주택	판넬
당초	3	산47	17	17			박유진	상일동 산47	박유진	박현진	주택	판넬/블럭
변경	3	산47-1	변경없음									
당초	4	산47	32	29		3	허철민	상일동 산47	허철민	송인경 허다운	주택	주택, 판넬/블럭 화장실 : 목조
변경	4	산47-1	변경없음									
당초	5	산47	36	31	5		송광진	상일동 산47	송광진	김유림	주택	주택 : 판넬/블럭 창고 : 목재
변경	5	산47-1	변경없음									
당초	6	산47	196	129	59	8	송병기	상일동 산47	송병기	이희순 송진숙	주택	판넬/블럭
변경	6	산47-1	191	129	54	8	송병기	상일동 산47	송병기	이희순 송진숙	주택	주택 : 판넬/블럭 창고 : 목조/철파이프조 화장실 : 판넬
당초	7	산47	40	36	4		이종규	상일동 산47	신안섭	이종규	주택	주택 : 판넬 창고 : 목조
변경	7		변경없음									
당초	8	산47	18	18			한순자	상일동 산47	한순자		주택	판넬
변경	8	산47-1	변경없음									
당초	9	산46	60	60			박성필	상일동 산46	강영순 박성필 강성국	박성은 강주석 갈준순	주택	판넬
변경	9	산46-6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8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
 계획 변경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로 도시계획
 시설(공원)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
 267호(2001.8.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2005-101호(2005.3.10)로 도시계획시설
 (명일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6호
 (2005.8.4)로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
 일동 산46-2번지 일대의 명일근린공원 조
 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른 제88조·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
 획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실시계획의 변경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6-2번지 일대(변경없음)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명칭 : 명일근린공원조성
- 3)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 9,250㎡
 나)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특별시장
- 5)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06.12.31
 - 변 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07.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지장물 조서
 (변경없음)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과(☎ 3707
 -4177) 및 강동구(공원녹지과 ☎ 480
 -1395)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3호(1999.2.19)
 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되고, 중구
 고시 제1999-10호(1999.2.25)로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62호(2006.
 5.4)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신당동432-2743~신당동432-2796
 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
 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
 고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2743~
 신당동 432-279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신당동 432-2743~신당동
 432-2796간 도로확장사업

다. 사업규모(변경없음) : 폭 28~32m,
 연장 287m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1) 서울특별시장
- 2)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마. 사업기간(사업기간연장)

- 당 초 : 2006. 5. 4~2006. 12. 31
 - 변 경 : 2006. 5. 4~2007. 12. 31
 바. 사용 및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변경없음
 사. 시민열람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3707-8135), 중구청 토목과(☎ 2260-4039)에 관계도면과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3호(2004.12.

20)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임.

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구분	토지이용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서강대학교)	계	158,900. ⁰⁰	0. ⁰⁰	158,900. ⁰⁰	
		건축부지	38,288. ⁹³	1,848. ⁶³	40,137. ⁵⁶	
		녹지부지	46,025. ⁰⁰	-25,832. ⁰⁰	20,193. ⁰⁰	
		조경부지	0. ⁰⁰	24,913. ⁰⁰	24,913. ⁰⁰	
변경	학교 (서강대학교)	도로부지	46,629. ⁰⁷	-1,402. ⁶³	45,226. ⁴⁴	
		주차장부지	544. ⁰⁰	0. ⁰⁰	544. ⁰⁰	
		광장부지	9,352. ⁰⁰	522. ⁰⁰	9,874. ⁰⁰	
		운동장부지	18,061. ⁰⁰	-49. ⁰⁰	18,012. ⁰⁰	

2)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층수,m)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층이하)	준 주거지역
기정	19. ³³ 이하	29. ³¹ 이하	12. ⁵⁶ 이하	58. ⁴¹ 이하	110. ²² 이하	111. ⁸³ 이하	3층12m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1층 이하
변경	20. ⁵² 이하	30. ⁵¹ 이하	12. ⁵⁶ 이하	51. ⁴² 이하	142. ⁷⁷ 이하	111. ⁸³ 이하	3층12m 이하	7층 이하	12층 이하	11층 이하

3)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높이의 범위(층수, 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신축	국제학사	1,395. ⁰⁴	1,543. ⁴¹	8,339. ⁸⁴	18,892. ¹⁰	지상5층 23. ¹ m이하	지상12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신축	국제인문관	0. ⁰⁰	2,232. ¹⁷	0. ⁰⁰	14,793. ¹³	지상3층 12. ⁰ m이하	지상7층 28. ⁰ m이하	자연경관지구 (3층12m)

※ 단,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다.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2) 및 마포구청 도시개발과(전화 330-238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
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55호(2005.5.4)
로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된 서울특
별시 중구 필동3가 26-1일대 도시계획시설

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동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
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임.

구 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 경	학교 (동국대학교)	중구 필동3가 26-1일대	계	124,010. ⁰⁰	-	124,010. ⁰	
			건축부지	37,090. ⁸²	50. ⁰⁸	37,140. ⁹	
			녹지부지	2,900. ⁰⁰	-	2,900. ⁰	
			조경부지	38,505. ⁷⁰	-	38,505. ⁷	
			도로부지	35,885. ⁵⁸	-50. ⁰⁸	35,835. ⁵	
			주차장부지	5,750. ⁰⁰	-	5,750. ⁰	
			광장부지	3,877. ⁹⁰	-	3,877. ⁹	

2)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구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의범위(층수, m)		
	계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계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3층12m이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3층12m이하)	자연경관지구
기 정	29. ⁹¹ 이하	28. ⁰⁰ 이하	29. ⁹⁵ 이하	115. ⁵⁴ 이하	76. ¹² 이하	115. ⁹⁹ 이하	3층12m 이하	3층12m 이하	3층12m 이하
변 경	29. ⁹⁵ 이하	28. ⁰⁰ 이하	29. ⁹⁹ 이하	119. ⁹⁴ 이하	76. ¹² 이하	120. ⁷⁷ 이하	3층12m 이하	3층12m 이하	3층12m 이하

3)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

건물명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높이의 범위(층수, m)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학술문화관	3,620. ⁶⁴	3,670. ⁷²	17,772. ⁸³	20,925. ⁴⁰	지상3층 12. ⁰ m이하	지상4층 16. ⁰ m이하	최고고도지구 (3층12m)
정보매체센터A동	1,053. ⁵¹	1,053. ⁵¹	4,628. ⁴⁷	5,514. ⁰⁸	지상3층 12. ⁰ m이하	지상4층 16. ⁰ m이하	
도서관및강의동	2,520. ⁰³	2,520. ⁰³	16,197. ³⁰	17,979. ³⁰	지상3층 12. ⁰ m이하	지상4층 16. ⁰ m이하	

※ 단,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에 의함.

다.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전화 6360-4782) 및 중구청 도시관리과 (전화 2260-1847~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6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단위 : 천원)

연번	회 계 별	예 산 액
1	○ 일 반 회 계	11,358,500,000
2	○ 기 타 특 별 회 계	4,622,800,000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949,500,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827,500,00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5,400,000
	- 주택사업특별회계	642,00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650,000,000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55,000,000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196,900,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3,000,000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500,000
	- 도시재정비특별회계	201,000,000
	-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2,000,000
3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39,700,000
	- 수도사업특별회계	789,000,000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50,700,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37호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 결정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단위: 천원)

축종	구분	과세표준 (결정액)
소	한우(600kg)	4,410
	육우(600kg)	2,237
돼지	성돈(100kg)	244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0호

강일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

바.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11,429.4	-	911,429.4	100.0		
주택 용지	계	382,524	-	382,524	42.0	
	공동주택용지	363,713	-	363,713	39.9	
	단독주택용지	18,811	-	18,811	2.1	
상업시설용지	11,603	-	11,603	1.3		
공공 시설	계	517,302.4	-	517,302.4	56.7	
	도로	162,398.4	감)43	162,355.4	17.8	
	보행자도로	692	-	692	0.1	
	공공청사	2,572	-	2,572	0.3	1개소

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9호(2004. 12. 27)로 강일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한 강일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1. 강일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없음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 시설	체육 시설	1,989	감)330	1,659	0.2	1개소
	사회복지 시설	1,455	증)1,322	2,777	0.3	1→2개소
	학교	49,540	감)9	49,531	5.4	초2,중1,고1
	유치원	1,187	-	1,187	0.1	
	종교용지	7,502	증)2	7,504	0.8	8개소
	광장	976	-	976	0.1	
	근린공원	135,409	-	135,409	14.9	2개소
	어린이공원	11,250	-	11,250	1.3	4개소
	완충녹지	33,783	증)788	34,571	3.8	11개소
	경관녹지	13,919	-	13,919	1.5	8개소
	공공공지	1,300	-	1,300	0.1	1개소
	하천	33,871	-	33,871	3.7	망월천
	자동차관련 시설	3,545	-	3,545	0.4	1개소
	공영차고지	34,622	감)736	33,886	3.7	존치
	주차장	11,932	감)994	10,938	1.2	1개소
	열공급 시설	2,874	-	2,874	0.3	1개소
	변전 시설	3,321	-	3,321	0.4	
	가스판매 시설	998	-	998	0.1	1개소
	유보지	2,167	-	2,167	0.2	

사. 토지 등의 세목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아.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1,429.4	-	911,429.4	100.0	
주 거 지 역	661,091	증) 2,642	663,733	72.8	
제1종 일반주거지역	29,102	증) 3,321	32,423	3.6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1,989	감) 679	631,310	69.2	
일 반 상 업 지 역	22,496	-	22,496	2.5	
자 연 녹 지 지 역	227,842.4	감) 2,642	225,200.4	24.7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강동구 하일동 일원	자연녹지 지 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321	지구내 옥내변전시설(환경친화형)의 설치가 가능한 변전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3,321㎡)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679	공영차고지 선형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도로(총괄)

구 분	류 별	폭원 (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5	35	8,201	8,201	162,398.4	163,047.4		
일 반 도 로	계		30	30	8,087	8,087	161,632.4	162,355.4		
	소 계		2	2	1,115	1,115	31,226	31,380		
	대로	3류	25	2	2	1,115	1,115	31,226	31,380	
	소 계		14	14	5,229	5,229	114,638.4	115,201.4		
	중로	1류	20-22	6	6	4,160	4,160	99,254.4	99,741.4	
		2류	15	2	2	302	302	5,074	5,099	
		3류	12	6	6	767	767	10,310	10,361	
	소 계		14	14	1,743	1,743	15,768	15,774		
	소로	1류	10	4	4	297	295	3,327	3,308	
		2류	8	6	6	1,215	1,217	10,888	10,906	
3류		6	4	4	231	231	1,553	1,560		
보행자 전용도로	계		5	5	114	114	766	692		
	소로	3류	6	5	5	114	114	766	692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7	25	주간선 도로	1,440 (591)	- 하일동 571-6	- 하일동 366-11	일반 도로			()사업 지구내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524	- 하일동 469-11	중1-1 하일동 472-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1,428	- 하일동 472-1	- 하일동 64-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2	22	보조간선 도로	236	중1-3 하일동 299-9	- 하일동 89-1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	22	보조간선 도로	950	대3-157 하일동 316-7	대3-157 하일동 367-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4	22	보조간선 도로	828	대3-157 하일동 315-8	대3-157 하일동 367-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	22	집산 도로	114	중1-1 하일동 415-1	중1-6 하일동 43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6	22	보조간선 도로	574	중1-4 하일동 435-1	대3-1 하일동 471-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79	중1-1 하일동 63-7	중1-3 하일동 348-3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23	중1-3 하일동 302-1	중3-4 하일동 289-1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70	중1-2 하일동 280	소2-2 하일동 277-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30	중3-4 하일동 316-2	중2-2 하일동 304-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90	3-157 하일동 575-8	중2-2 하일동 289-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138	중1-3 하일동 316-2	중3-3 하일동 306-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8	중1-6 하일동 435-1	소2-3 하일동 435-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121	중1-4 하일동 450-1	소1-4 하일동 550-1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71	중3-2	중3-3	일반 도로			
							하일동 304-7	하일동 304-4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79	중3-2	중3-3	일반 도로			
							하일동 304-13	하일동 305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62	중3-6	-	일반 도로			
							하일동 550-1	하일동 551-10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60	중3-6	-	일반 도로			
							하일동 550-1	하일동 551-10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85	중3-6	-	일반 도로			
							하일동 550-1	하일동 546-1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24	중1-2	중1-2	일반 도로			
							하일동 280	하일동 328-14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03	중3-1	중2-2	일반 도로			
							하일동 277-9	하일동 289-4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01	소2-4	소2-4	일반 도로			
							하일동 435-1	하일동 409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2	소2-3	-	일반 도로			
							하일동 435-1	하일동 409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8	소2-3	소2-4	일반 도로			
							하일동 410	하일동 409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47	소2-3	소2-4	일반 도로			
							하일동 571-1	하일동 551-8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249	대3-157	소1-3	일반 도로			
							하일동 571-1	하일동 551-8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7	소2-1	-	일반 도로		'02.9.26	
							하일동 331-1	하일동 333-15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65	소2-1	소2-1	일반 도로		'02.9.26	
							하일동 328-1	하일동 328-4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9	소3-2	소2-1	일반 도로		'02.9.26	
							하일동 328-1	하일동 333-5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	소2-3	보3-6	일반 도로			
							하일동 412-2	하일동 412-2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26	중1-1	소2-3	보행자 전용도로			
							하일동 412-2	하일동 412-1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18	중1-6	소2-4	보행자 전용도로			
							하일동 435-2	하일동 435-1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8	소3-1	-	보행자 전용도로			
							하일동 412-2	하일동 412-2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3	대3-157	중3-4	보행자 전용도로			
							하일동 304-2	하일동 304-2				
기정	소로	3	9	6	특수 도로	39	중1-1	소2-3	보행자 전용도로			
							하일동 306-10	하일동 304-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3	소로1-3	폭원 : 10m 연장변경(62m→60m)	공영차고지 존치시설 선형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소로2-6	소로2-6	폭원 : 8m 연장변경(247→249m)	공영차고지 존치시설 선형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2) 주차장(변경)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932	감 994	10,938		
변 경	1	주차장	하일동 292-2 일원	11,932	감 994	10,938	'00.3.2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면적 감소 11,932m ² →10,938m ²	사회복지시설 1개소 추가계획에 따른 면적감소

(3) 자동차정류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정류장	하일동 307-2 일원	34,622	감 736	33,886	'98.10.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정류장	면적 감소 34,622m ² → 33,886m ²	준치시설부지 결정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

(4)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7,702	증788	48,490		
계					33,783	증788	34,57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00-3 일원	1,512	-	1,51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553-4 일원	6,621	증985	7,606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08-3 일원	4,289	감206	4,083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449-1 일원	1,555	-	1,555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469 일원	1,588	-	1,588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419-1 일원	13,199	증9	13,20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71 일원	1,563	-	1,56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68-9 일원	774	-	774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31-1 일원	618	-	618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28-14일원	619	-	619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28-8 일원	1,445	-	1,445	'02.9.26	
계					13,919	-	13,91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25-1 일원	8,813	-	8,813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47-5 일원	711	-	71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96 일원	1,290	-	1,290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31 일원	1,509	-	1,509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69-2 일원	789	-	789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27-2 일원	424	-	424	'02.9.26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33	200	-	200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70-6 일원	183	-	18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완충녹지	면적 증가 6,621㎡→7,606㎡	존치시설 결정으로 인한 완충녹지면적 증가
3	완충녹지	면적 감소 4,289㎡→4,083㎡	존치시설 결정으로 인한 완충녹지면적 감소
6	완충녹지	면적 증가 13,199㎡→13,208㎡	존치시설 결정으로 인한 완충녹지면적 증가

(5) 공 원 : 변경 없음

(6) 광 장 : 변경 없음

(7) 공공공지 : 변경 없음

(8) 열공급설비 : 변경 없음

(9) 전기공급설비 : 변경 없음

(10) 학교(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9,540	감 9	49,531		
변 경	1	학교	초등학교	하일동 347-3일원	11,848	감 9	11,839	'92.10.22	
기 정	2	학교	초등학교	하일동 414-2일원	11,042	-	11,042		
기 정	3	학교	중학교	하일동 373-3일원	12,575	-	12,575		
기 정	4	학교	고등학교	하일동 439-2일원	14,075	-	14,07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초등학교	면적 감소 11,848㎡→11,839㎡	존치시설결정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감소

(11) 공공청사 : 변경 없음

(12) 사회복지시설(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55	증 1,322	2,777	
기 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하일동 465-4 일원	1,455	-	1,455	
신 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하일동 301 일원	-	증 1,322	1,3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사회복지시설	신설 1,322㎡	사회복지시설 1개소 추가계획

(13) 하천 : 변경 없음
 4) 도시관리계획(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지구 변경(해제) 결정
 (1)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변경(해제)결정 : 변경 없음.
 2. 강일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사. 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조서

나.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라. 시행자 : 변경 없음
 마. 시행기간 : 변경 없음
 바. 시행방식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11,429.4	-	911,429.4	100.0	
주 거 지 역	661,091	증) 2,642	663,733	72.8	
제1종 일반주거지역	29,102	증) 3,321	32,423	3.6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1,989	감) 679	631,310	69.2	
일 반 상 업 지 역	22,496	-	22,496	2.5	
자 연 녹 지 지 역	227,842.4	감) 2,642	225,200.4	24.7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강동구	자연녹지 지 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321	지구내 옥내변전시설(환경친화형)의 설치가 가능한 변전소 부지 용도지역 변경(3,321㎡)
2	하일동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지 역	679	공영차고지 선형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총괄)

구 분	류 별	폭 원 (m)	노선수		연 장(m)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35	35	8,201	8,201	162,398.4	163,047.4		
일 반 도 로	계		30	30	8,087	8,087	161,632.4	162,355.4		
	소 계		2	2	1,115	1,115	31,226	31,380		
	대로	3류	25	2	2	1,115	1,115	31,226	31,380	
	소 계		14	14	5,229	5,229	114,638.4	115,201.4		
	중로	1류	20-22	6	6	4,160	4,160	99,254.4	99,741.4	
		2류	15	2	2	302	302	5,074	5,099	
		3류	12	6	6	767	767	10,310	10,361	
	소 계		14	14	1,743	1,743	15,768	15,774		
	소로	1류	10	4	4	297	295	3,327	3,308	
		2류	8	6	6	1,215	1,217	10,888	10,906	
3류		6	4	4	231	231	1,553	1,560		
보행자 전용도로	계		5	5	114	114	766	692		
	소로	3류	6	5	114	114	766	692		

■ 세부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57	25	주간선 도로	1,440 (591)	- 하일동 571-6	- 하일동 366-11	일반 도로			() 사업 지구내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524	- 하일동 469-11	중1-1 하일동 472-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1,428	- 하일동 472-1	- 하일동 64-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2	22	보조간선 도로	236	중1-3 하일동 299-9	- 하일동 89-1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	22	보조간선 도로	950	대3-157 하일동 316-7	대3-157 하일동 367-1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4	22	보조간선 도로	828	대3-157 하일동 315-8	대3-157 하일동 367-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	22	집산 도로	114	중1-1 하일동 415-1	중1-6 하일동 43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6	22	보조간선 도로	574	중1-4 하일동 435-1	대3-1 하일동 471-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79	중1-1 하일동 63-7	중1-3 하일동 348-3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23	중1-3 하일동 302-1	중3-4 하일동 289-1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70	중1-2 하일동 280	소2-2 하일동 277-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30	중3-4 하일동 316-2	중2-2 하일동 304-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90	3-157 하일동 575-8	중2-2 하일동 289-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138	중1-3 하일동 316-2	중3-3 하일동 306-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8	중1-6 하일동 435-1	소2-3 하일동 435-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6	12	집산 도로	121	중1-4 하일동 450-1	소1-4 하일동 550-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71	중3-2 하일동 304-7	중3-3 하일동 304-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79	중3-2 하일동 304-13	중3-3 하일동 30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62	중3-6 하일동 550-1	- 하일동 551-10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60	중3-6 하일동 550-1	- 하일동 551-10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85	중3-6 하일동 550-1	- 하일동 54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24	중1-2 하일동 280	중1-2 하일동 328-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03	중3-1 하일동 277-9	중2-2 하일동 289-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01	소2-4 하일동 435-1	소2-4 하일동 40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2	소2-3 하일동 435-1	- 하일동 40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8	소2-3 하일동 410	소2-4 하일동 40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247	소2-3 하일동 571-1	소2-4 하일동 551-8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6	8	국지 도로	249	대3-157 하일동 571-1	소1-3 하일동 55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67	소2-1 하일동 331-1	- 하일동 333-15	일반 도로		'02.9.2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65	소2-1 하일동 328-1	소2-1 하일동 328-4	일반 도로		'02.9.2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9	소3-2 하일동 328-1	소2-1 하일동 333-5	일반 도로		'02.9.26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0	소2-3 하일동 412-2	보3-6 하일동 41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26	중1-1 하일동 412-2	소2-3 하일동 412-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18	중1-6 하일동 435-2	소2-4 하일동 435-1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8	소3-1 하일동 412-2	- 하일동 412-2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23	대3-157 하일동 304-2	중3-4 하일동 304-2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9	6	특수 도로	39	중1-1 하일동 306-10	소2-3 하일동 304-2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3	소로1-3	폭원 : 10m 연장변경(62m→60m)	공영차고지 존치시설 선형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소로2-6	소로2-6	폭원 : 8m 연장변경(247→249m)	공영차고지 존치시설 선형조정에 따른 도로연장 변경

(2) 주차장(변경)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932	감 994	10,938		
변 경	1	주차장	하일동 292-2 일원	11,932	감 994	10,938	'00.3.2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면적 감소 11,932m ² →10,938m ²	사회복지시설 1개소 추가계획에 따른 면적감소

(3) 자동차정류장(변경)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자동차정류장	하일동 307-2 일원	34,622	감 736	33,886	'98.10.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자동차정류장	면적 감소 34,622m ² →33,886m ²	존치시설부지 결정으로 인한 경미한 변경

(4) 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47,702	증788	48,490		
계					33,783	증788	34,57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00-3 일원	1,512	-	1,51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553-4 일원	6,621	증985	7,606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08-3 일원	4,289	감206	4,083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449-1 일원	1,555	-	1,555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469 일원	1,588	-	1,588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419-1 일원	13,199	증9	13,208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71 일원	1,563	-	1,563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68-9 일원	774	-	774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31-1 일원	618	-	618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28-14일원	619	-	619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하일동 328-8 일원	1445	-	1,445	'02.9.26	
계					13,919	-	13,91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25-1 일원	8,813	-	8,813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47-5 일원	711	-	71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96 일원	1,290	-	1,290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31 일원	1,509	-	1,509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69-2 일원	789	-	789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327-2 일원	424	-	424	'02.9.26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33	200	-	200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하일동 470-6 일원	183	-	183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완충녹지	면적 증가 6,621m ² →7,606m ²	존치시설 결정으로 인한 완충녹지면적 증가
3	완충녹지	면적 감소 4,289m ² →4,083m ²	존치시설 결정으로 인한 완충녹지면적 감소
6	완충녹지	면적 증가 13,199m ² →13,208m ²	존치시설 결정으로 인한 완충녹지면적 증가

- (5) 공 원 : 변경 없음
 (6) 광 장 : 변경 없음
 (7) 공공공지 : 변경 없음
 (10) 학교(변경)

- (8) 열공급설비 : 변경 없음
 (9) 전기공급설비 : 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9,540	감 9	49,531		
변 경	1	학교	초등학교	하일동 347-3일원	11,848	감 9	11,839	'92.10.22	
기 정	2	학교	초등학교	하일동 414-2일원	11,042	-	11,042		
기 정	3	학교	중학교	하일동 373-3일원	12,575	-	12,575		
기 정	4	학교	고등학교	하일동 439-2일원	14,075	-	14,07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초등학교	면적 감소 11,848m ² →11,839m ²	준치시설결정 선형조정에 따른 면적 감소

- (11) 공공청사 : 변경 없음
 (12) 사회복지시설(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55	증 1,322	2,777	
기 정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하일동 465-4 일원	1,455	-	1,455	
신 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하일동 301 일원	-	증 1,322	1,3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사회복지시설	신설 1,322m ²	사회복지시설 1개소 추가계획

- (13) 하천 : 변경 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 선행추진중인 일단의 주택지조성사
 업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추후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 (1)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 도로의 이면부에서 진입해야 하는
 가구는 1열로, 내부가구는 2열로
 구성 (220~260m²)

- 필지의 합병은 규제내용이 동일한 2개의 필지에 한해서 허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m ²	평	
R-1	1	252	76	
	2	252	76	
	3	252	76	
	4	252	76	
	5	252	76	
	6	252	76	
	7	253	76	
	8	248	75	
	9	246	75	
	10	246	75	
	11	247	75	
	12	246	75	
소 계		2,998	907	
R-2	1	234	71	
	2	248	75	
	3	248	75	
	4	250	76	
	5	248	75	
	6	245	74	
	7	248	75	
	8	232	70	
소 계		1,953	591	
R-3	1	227	69	
	2	236	71	
	3	235	71	
	4	236	71	
	5	234	71	
	6	226	68	
소 계		1,394	421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m ²	평	
R-4	1	251	76	
	2	252	76	
	3	252	76	
	4	249	75	
	5	262	79	
소 계		1,266	382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68세대(가구당 50평), 16,396m² 존치

(나) 공동주택용지

■ 기본방향

전체 및 단지별 개발밀도, 층고 계획, 평형배분계획 등에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리적

지침을 수립하여 공간의 질서 부여·층고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환경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유도

■ 공동주택 건설계획

- 개발계획상 제시한 가구규모 및 주택유형을 적극 반영

<강일도시개발계획상 가구규모 및 주택 유형>

획지번호	면 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평 형	층 고	비 고
	(m ²)	평						
A1	24,550	7,426	282	790	160	X3, X4	15층이하	임대/일반
A2	34,097	10,314	442	1,238	160	X3, X4, X5	15층이하	
A3	46,915	14,192	987	2,764	200	X1, X3, X4	15층이하	
A4	38,390	11,613	748	2,083	200	X2, X3, X4	15층이하	
A5	36,913	11,166	722	2,033	200	X2, X3, X4	15층이하	
A6	29,879	9,039	553	1,548	200	X1, X3, X4	15층이하	
A7	32,357	9,788	731	2,046	200	X1, X3, X4	15층이하	
A8	27,451	8,304	410	1,148	160	X2, X3, X4	15층이하	
A9	52,189	15,787	841	2,355	180	X2, X3, X4, X5	15층이하	
A10	40,972	12,394	694	1,943	200	X2, X3, X4, X5	15층이하	
합계	363,713	110,023	6,410	17,948	-	X1, X2, X3, X4, X5	15층이하	

주) 1. 평형은 12평 : X1, 15평 : X2, 18평 : X3, 25평 : X4, 34평 : X5로 구분된다.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 산정된 것임

(다) 상업용지

■ 기본방향

- 생활권 구분상 강일도시개발구역내에서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할 지구중심의 상업용지가 필요하며 이용인구에 의하여 추정.
- 또한 근린주구를 기본으로 하는 근린생활권에 필요한 일상용품 판매와 서비스 기능을 갖는 근린생활시설용지 필요.

■ 상업지역 건설계획

- 대규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필지의 합병 가능

- 인접도로의 성격, 가구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및 수용확지수 등을 고려하여 가구의 규모를 결정
- 전면도로의 교통혼잡과 미관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의 진·출입은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
- 개발촉진이 필요한 상업용지에 한하여 2필지로 획분할 가능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m ²	평				m ²	평	
C-1	1	533	161		C-3	5	459	139	
	2	560	169			6	372	113	
C-2	1	678	205			7	381	115	
	2	651	197			8	353	107	
	3	664	201			C-4	1	518	157
	4	655	198		2		503	152	
	5	642	194		3		523	158	
C-3	1	351	106		4		504	152	
	2	384	116		5		449	136	
	3	364	110		6	452	137		
	4	389	118		C-5	1	1,218	368	

(라) 기타용지

- 기타 공공시설은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규모를 검토하되 계획지표의 범위안에서 적정규모를 구획

용 지 분 류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m ²	평	
종 교 시 설 용 지	종-1	660	200	종교시설
	종-2	660	200	
	종-3	1,744	526	

용 지 분 류	획지번호	면 적		비 고
		m ²	평	
종 교 시 설 용 지	종-4	660	200	종교시설
	종-5	660	200	
	종-6	660	200	
	종-7	1,800	544	
	종-8	660	200	
교 육 시 설 용 지	유-1	542	164	유치원
	유-2	645	195	
기 타 시 설 용 지	체육시설	1,659	502	
	가-1	998	302	가스판매시설
	자-1	3,549	1,072	자동차관련시설

(2)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단 독 주택용지	R	-단독주택, 다가구주택(4가구 이내)	-지정용도 이외용도 -다세대 및 연립주택 -지하층 주거용도 금지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지정용도 이외용도

■ 상업용지

구 분	용 도	
불허용도	단 독 주 택	전체불허
	공 동 주 택	전체불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실외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 료 시 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자연권수련시설
	운 동 시 설	골프연습장

구 분		용 도	
불허용도	업무시설	-	
	숙박시설	전체불허	
	위락시설	-	
	공장	전체불허	
	창고시설	전체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주유소에 한하여 허용)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전체불허	
	공공용시설	불허(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허용)	
	관광휴게시설	불허(휴게소에 한하여 허용)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조례에서는 허용하는 용도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용도로 지정

(나) 건축물 용적률·건폐율·높이계획

■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단독주택용지	60%이하	150%이하	최고 3층이하
공동주택용지	40%이하	160%이하 (A1, A2, A8)	최고 15층이하
		180%이하 (A9)	
		200%이하 (A3, A4, A5, A6, A7, A10)	

※ 공동주택용지 A1의 경우 고속도로변으로부터의 소음 등 환경악영향 저감 차원에서 고속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부터 50m까지 5층 이하 적용

■ 상업시설용지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상업시설용지	60%이하	600%이하	최고10층(40m) 이하

■ 기타 시설용지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주차장	60%이하	400%이하	최고 7층 이하
자동차정류장	20%이하	5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학교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5층(20m) 이하
공공청사	60%이하	300%이하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전기공급시설	50%이하	15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열공급시설	60%이하	200%이하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체육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5층(20m) 이하
자동차관련시설	60%이하	200%이하	최고 3층(12m) 이하
유치원	60%이하	200%이하	
가스판매시설	60%이하	200%이하	

■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제 어 요 소 (건축한계선)	내 용	
단독주택용지	1m	• 대지경계선에서 1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조성	
공동주택용지	3m, 6m	• 대지경계선에서 20m이상 주요간선가로변 6m, 그 외 지역 3m 건축한계선을 설정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용지의 진입부 • 부대복리시설 : 주요 보행결절점	
상업 용지	이면부 (C-1, 3, 4)	1m	• 대지경계선에서 1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 조성
	간선가로변 (C-2, 5)	3m	• 대지경계선에서 3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 조성
종교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유치원	1m, 3m	• 대지경계선에서 1m, 3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전면공지 조성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 가스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	3m, 6m	• 대지경계선에서 3m, 6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차폐조경 설치 • 차폐조경을 통한 주거위해시설로부터 주거환경보호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제어요소	적 용 구 간	제 어 내 용
전면공지	• 간선가로변 건축한계선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차폐조경	• 자동차관련시설, 가스판매시설,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 (주거위해시설)	• 폭 3m, 6m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주거환경을 보호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6361-3925),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480-1385), SH공사 사업3본부 개발계획팀(☎ 3410-740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1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

나. 변경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	13,748	14,101	

다. 변경사유 : 당해 구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인접된 일부 노후화된 불량건축물과 도로를 구역내에 편입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

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가. 위 치 :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
 지 일대(구역번호 20번)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²)
신 규	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	동대문구 회기동 62-34번지 일대	14,101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비 율(%)	비 고
합 계		14,101.0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963.00	13.92	
	도 로	1,563.00	11.08	신설, 확폭
	공 원	400.00	2.84	신설
택 지	소 계	12,138.00	86.08	
	택 지	12,138.00	86.08	조합원 및 일반분양아파트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0	회기동 61-4	회기동 71-4		서고시 제187호 ('78.5.1)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	회기동 61-4	회기동 62-60			일부폐지 노선분리
변경	소로	1	b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5	회기동 65-102	회기동 71-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0	회기동 65-77	회기동 105-33		서고시 제187호 ('78.5.1)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0	회기동 65-77	회기동 105-33			일부확폭 (B: 6m→8m)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0	회기동 62-31	회기동 61-11		서고시 제187호 ('78.5.1)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3	회기동 65-148	회기동 61-11			일부폐지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0	회기동 64-1	회기동 62-62			

2)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 원	소공원	회기동 65-34번지 일대	-	증)400.0	400.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경로당	단지내	-	증)60.00	60.00	
	관리사무소	단지내	-	증)90.00	90.00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	증)500.00	500.00	
	탁아시설	단지내	-	증)50.00	50.00	
	도서관(문고)	단지내	-	증)50.00	50.00	
	근린생활시설	단지내	-	증)1,100.00	1,100.00	

마.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규	회기제1주택재개발구역	14,101	회기동 62-34번지 일대	103	-	-	-	103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신설	택지	12,138	회기동 62-34번지 일대	34,681.4㎡	공동주택 (조합,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	25.29	193.45	50.20m 6~17층 평균 12.42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6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80%이상					
			구 분	평 형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85㎡이하	33	84.95	158	83.16	
			85㎡초과	45	119.33	32	16.84	
			계			190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소로 3-a 도로변 건축한계선 : 1.5m					

바.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중세분) 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4,101.00	-	14,101.00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14,015.20	증)85.80	14,101.00	100.0%
	2종일반주거지역(7층)	13,150.20	감)13,150.20	-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14,015.20	14,015.20	99.4%
	3종일반주거지역	865.00	감)865.00	-	-
일반상업지역	85.80	-	85.80	0.6%	

사.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
내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아.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

대·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여 방법의 주
택재개발사업

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87세대

- 기존세대수 103세대 → 계획세대수

190세대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3707-8497) 및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71)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같은법 제2조 규정의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뉴타운 지구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구 분	지구명	유 형	자치구	위 치	면적(m ²)
2차 뉴타운	중 화	주거지형	중랑구	중화동 312일대	510,517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지구명	유 형	자치구	위 치	면 적(m ²)
계		주거지형	3	3개소	1,974,251
2차 뉴타운	노량진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일대	762,160
	신 정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일대	700,700
	방 화	주거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일대	511,391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거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야 함.

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효력을 잃음

4. 관련도면 : 공람장소에 별도 비치

5.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반(☎ 2171-2498), 뉴타운사업2반(2171-2641), 뉴타운사업3반(☎2171-2676)
- 동작구청 도시관리과(☎ 820-9264), 강서구청 도시계획과(2600-6855), 중랑구청 뉴타운사업반(☎ 490-3882), 양천구청 균형발전추진반(☎ 2650-3660).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1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등록말소 등을 위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이사, 부재, 미거주)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설업자 등록말소 등					
2. 당사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발급일	
	탐월드비전종합건설(주)	정병석	건축101374	서울시 양천구 목동 713-5	미발급	
	(주)금오씨엔디	원인식	건축100478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5-4	미발급	
	티엠엘종합건설(주)	강환국	건축101242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1동 89-165	미발급	
	이가건설(주)	문정근	건축10141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9-26	미발급	
	(주)재왕종합건설	김주영	건축010138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46	미발급	
	한숲종합건설(주)	김성찬	건축101449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86-3	미발급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설업자 등록말소 등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건설행정과	담당자	조우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번호	3707-9647
	일 시	2006년 12월 28일 18시까지				
	장 소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사무실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성 명	한홍재, 장태중				

★참석자 지참서류: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법인등기부상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참),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될 서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 3707-96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25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0551	2006.12.7	(주)내외시스템 박현양 110111-1192551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51
2	200552	"	(주)케이프리트랙 안기호 110111-3550509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0-3 하계테크노타운 비동 402호
3	200553	"	케이준 김준균 720215-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7-30 101호
4	200554	"	(주)인포니아 강권 110111-2411075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412호
5	200555	"	(주)이노시스정보기술 김완태 110111-2279019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537-6 해외빌딩 1층
6	200556	"	(주)대용와트스 남상태 110111-084342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0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815호
7	200557	"	유넷시스템(주) 심중현 110111-2709214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1-8 우제빌딩 5층
8	200558	"	마인네트워크(주) 이종우 110111-1963332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33-3 제일빌딩 405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실(02-6360-4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3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3410	(주)에드윈텔레콤 (김 춘 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2-2 남양빌딩 2층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부족)	영업정지 1월 (2006.12.9-18)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
66조, 시행령 제16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2. 7.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당 사 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 호(대표성명)	주 소		
110036	(주)파이오넷텔레콤 (박 재 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702호	처분유예기간까지 기준미달 사항(자본금실효)미보완	등록취소
113000	트윈정보통신(주) (조 기 식)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0-13 원지빌딩 3층	처분유예기간까지 기준미달 사항(기술자부족)미보완	등록취소
113437	(주)휴먼이시스 (이 대 우)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133	처분유예기간까지 기준미달 사항(기술자부족)미보완	등록취소
200376	(주)인터포스글로벌 (김 상 민)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2 위너스오피스텔 1동 707호	처분유예기간까지 기준미달 사항(기술자부족)미보완	등록취소
200069	코리아타코(주) (김 광 수)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1-11 대륭테크노타운8차 1517호	처분유예기간까지 기준미달 사항(기술자부족)미보완	등록취소
112008	(주)에이티엠네트웍스 (서 호 석)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에이동 1306호	처분유예기간까지 기준미달 사항(자본금실효)미보완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1
호, 제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3. 행정처분 일자 : 2006. 10. 9.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3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등록부서
814	NGO환경보호 국민운동 서울특별시본부	용산구 한강로3가 63-395 (용산구민회관 내)	한남영	2006. 11. 6	•생강살리기, 상수원살리기, 물절약운동 캠페인 실시 •환경청소년단 및 환경기동봉사단 등을 구성하여 하천순찰 감시활동과 홍보, 교육캠페인 실시 등	환경과 (☎ 6321-4089)
815	복십자후원회	중구 저동2가 64번지 인당관 8층	백낙환	2006. 11. 8	•결핵예방과 치료 및 생활이 어려운 결핵환자 및 수용환자 지원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등	보건정책과 (☎ 3707-9286)
816	노년기희망봉사단	중구 태평로2가 341-2 태양빌딩 5층	연제은	2006. 11. 8	•노년기 자원봉사활동 정신과 가치함양 및 봉사 활동 전개 •노년기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선도, 체 험봉사지도 등	노인복지과 (☎ 3707-9649)
817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220호	신종원	2006. 11. 8	•시민의식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학습조직 운영 등의 연구개발사업 •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등	시민협력과 (☎ 6360-4655)
818	서울동물 학대방지연합	성북구 성북동 350-5	한정아	2006. 11.10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 및 교육·홍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및 계몽활동 등	농수산유통과 (☎ 6321-4058)
819	성동환경연구소	성동구 행당동 319-39 행당빌딩	김희전	2006. 11.16	•지역환경통신, 회원회보 발간 •폐식용 이용 저공해 재활용비누 만들기 등	환경과 (☎ 6321-4089)
820	백혈병어린이돕기 강남후원회	관악구 봉천6동 1666-52 동화빌딩 201호	송병수	2006. 11.17	•백혈병환자 진료비 지원 •백혈병환자 수술비 지원 •백혈병 후원 회원가입 및 홍보활동 등	보건정책과 (☎ 3707-9290)
821	생활환경지킴이	영등포구 문래4가 25-3	문중근	2006. 11.22	•안양천의 수질개선과 공원화 조성사업 참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반사업 만들기	환경과 (☎ 6321-4089)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등록부서나 시민협력
과(☎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3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

등록번호	단체명칭	구분	변경사항		변경등록일자	등록부서
			당초	변경		
630	아이프렌즈복지재단	소재지	마포구 염리동 상록A 103-1303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4층	2006.11.13	청소년담당관 (☎ 3707-9701)
685	민족화합청소년본부	소재지	서초구 방배동 758-6 삼호상가 106호	서초구 방배동 818-34 희성빌딩3층 301호	2006.11.24	청소년담당관 (☎ 6321-4052)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등록부서나 시민협력과(☎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제출 기한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영업정지

2.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록번호	성명(명칭)	주소	
200236	(주)티원정보통신 (최도열)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390-157 원석빌딩 1	등록기준미달(기술자부족)

4.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제15조(등록기준),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5. 의견서 제출

- 기관명 : 서울특별시(부서명 : 정보통신 담당관, 담당자 : 염영자 전자우편 yomyj@lycos.co.kr)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서소문 별관3동(☎ 02-6360-4991, FAX 02-3707-9029)
- 의견서 제출기한 : 2006. 12. 29(금) 11:00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

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02-6360-4991, 염영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3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일
일반측량업 02-01-2038	(주)도시정보 연구소	정점래 최형식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80-21 우리이-비즈센터 610호(☎ 02-575-1199)	2006.12.15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6361-3948)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55호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위탁협약 해지
 문래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해 아래와 같
 이 공고하오니, 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청소
 년과 주민 여러분께서는 향후 수련관을 이
 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
 러, 우리시에서는 문래청소년수련관이 조속
 한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 위탁
 자인 (사)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에 대해, 『서
 울시립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탁협약 해지사유가 발
 생하여 2006년 12월 31일 자로 해지통보
 하였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60호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
 단공개)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2(고
 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에 의하여 1
 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개인 체납자 명단

[개인 체납자 명단삽입(327명) :
 엑셀파일 별첨]

법인 체납자 명단

[법인 체납자 명단삽입(275개) :
 엑셀파일 별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세무과(02-
 3707-8787~90)로 연락바랍니다.

1억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개인)

(2006.11.20 현재)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체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1	강만용	43	서울 마포구 합정동	12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1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21백만원 체납발생
2	강봉규	36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0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4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04백만원 체납발생
3	강석순	52	서울 중구 황학동	10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7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06백만원 체납발생
4	강수남	41	서울 강남구 대치동	38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09월 30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381백만원 체납발생
5	강신중	6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15백만원 체납발생
6	강용덕	6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1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7	강용수	78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2월 28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129백만원 체납발생
8	강은채	61	서울 서초구 잠원동	15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10월 31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20건 156백만원 체납발생
9	강인환	68	서울 성북구 안암동2가	166	취득세(부동산)	1998년 07월 31일	1998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4건 166백만원 체납발생
10	강재근	6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230백만원 체납발생
11	강재원	50	경기 광명시 광명동	22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3건 229백만원 체납발생
12	강현식	56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215백만원 체납발생
13	강호원	4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3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116백만원 체납발생
14	고민경	72	서울 종로구 재동	4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7년 02월 28일	1997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408백만원 체납발생
15	공재주	51	서울 송파구 마천동	146	취득세(부동산)	1999년 07월 31일	1999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4건 146백만원 체납발생
16	곽노홍	61	서울 중랑구 중화동	26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10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5건 269백만원 체납발생
17	곽영렬	57	서울 마포구 망원동	127	등록세(부동산)	2000년 01월 31일	2000년 등록세(부동산) 등 총4건 127백만원 체납발생
18	구교운	55	경기 파주시 교하읍	23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3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0건 232백만원 체납발생
19	구동희	44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4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12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20	권선민	51	서울 노원구 공릉동	15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55백만원 체납발생
21	권영수	6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7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3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273백만원 체납발생
22	권영진	54	서울 마포구 서교동	16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4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164백만원 체납발생
23	권용복	71	서울 송파구 오금동	18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10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7건 188백만원 체납발생
24	권용희	5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11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16백만원 체납발생
25	권호인	58	충남 천안시 성환읍	6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2년 10월 31일	199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608백만원 체납발생
26	기부왕	74	서울 강동구 천호동	11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19백만원 체납발생
27	김건세	59	서울 종로구 구기동	26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11월 30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268백만원 체납발생
28	김관취	63	서울 마포구 대흥동	10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2건 106백만원 체납발생
29	김광배	60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24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241백만원 체납발생
30	김광우	64	충북 제천시 백운면	13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36백만원 체납발생
31	김광호	68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2월 28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56백만원 체납발생
32	김기언	59	서울 강서구 등촌동	1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8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33	김기창	75	서울 관악구 봉천동	84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04월 30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848백만원 체납발생
34	김노언	64	서울 성동구 옥수동	41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12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418백만원 체납발생
35	김대환	65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6건 141백만원 체납발생
36	김동근	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10월 31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56백만원 체납발생
37	김동원	69	서울 강남구 도곡동	33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4건 330백만원 체납발생
38	김동택	56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18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11월 30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88백만원 체납발생
39	김동호	55	울산 남구 삼산동	16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0건 163백만원 체납발생
40	김명성	63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4월 30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4건 190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41	김명하	53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3건 102백만원 체납발생
42	김상철	68	경기 광주시 오포읍	34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5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2건 340백만원 체납발생
43	김성복	54	서울 서초구 반포동	46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5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463백만원 체납발생
44	김성실	59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5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1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51백만원 체납발생
45	김성환	45	서울 노원구 중계동	12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21백만원 체납발생
46	김세현	59	인천 계양구 계산동	374	취득세(부동산)	2000년 09월 30일	2000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374백만원 체납발생
47	김수산	75	강원 철원군 동송읍	14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147백만원 체납발생
48	김수환	71	경기 여주군 북내면	19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07월 31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98백만원 체납발생
49	김양태	44	경기 의왕시 내손동	64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6월 30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645백만원 체납발생
50	김연식	56	서울 강동구 명일동	10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7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01백만원 체납발생
51	김영교	6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1건 131백만원 체납발생
52	김영숙	63	전북 남원시 대신면	262	취득세(부동산)	2000년 09월 30일	2000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262백만원 체납발생
53	김영의	61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207백만원 체납발생
54	김영호	58	경기 파주시 아동동	37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2년 11월 30일	199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374백만원 체납발생
55	김원수	70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8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280백만원 체납발생
56	김용구	61	충남 천안시 신부동	15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4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156백만원 체납발생
57	김용범	4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55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9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6건 554백만원 체납발생
58	김용석	51	서울 강남구 신사동	41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9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419백만원 체납발생
59	김용주	49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7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7건 172백만원 체납발생
60	김용직	51	서울 양천구 신월동	11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1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61	김용철	42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34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체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62	김우진	67	서울 서초구 방배동	19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9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91백만원 체납발생
63	김원형	70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12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23백만원 체납발생
64	김윤환	64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12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9월 30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23백만원 체납발생
65	김응태	62	서울 중랑구 중화동	15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11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153백만원 체납발생
66	김인국	75	경기 용인시 구성읍	28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281백만원 체납발생
67	김자범	70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12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129백만원 체납발생
68	김재선	55	서울 강남구 신사동	14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총1건 141백만원 체납발생
69	김재원	67	서울 노원구 상계동	25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7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258백만원 체납발생
70	김재원	68	서울 강남구 일원동	24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4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245백만원 체납발생
71	김재준	79	서울 종로구 원서동	16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1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총1건 162백만원 체납발생
72	김재철	41	서울 종로구 창신동	12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9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20백만원 체납발생
73	김재호	47	서울 성북구 정릉동	32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321백만원 체납발생
74	김정석	58	서울 노원구 하계동	12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25백만원 체납발생
75	김정섭	44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0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7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05백만원 체납발생
76	김정성	61	인천 강화군 강화읍	24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10월 31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9건 242백만원 체납발생
77	김정숙	60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24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10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3건 246백만원 체납발생
78	김정원	80	경기 김포시 사우동	13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11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3건 131백만원 체납발생
79	김정철	37	서울 강서구 등촌동	147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10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47백만원 체납발생
80	김종대	31	경기 군포시 당동	33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10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1건 330백만원 체납발생
81	김종수	62	서울 송파구 오금동	1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11월 30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9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82	김종오	54	서울 도봉구 창동	15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4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56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83	김주신	70	서울 양천구 목동	26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269백만원 체납발생
84	김주원	78	서울 송파구 방이동	58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04월 30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580백만원 체납발생
85	김준식	60	서울 광진구 증곡동	21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4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218백만원 체납발생
86	김진용	67	서울 성북구 석관동	19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2월 28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98백만원 체납발생
87	김찬규	79	서울 구로구 운수동	10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1건 103백만원 체납발생
88	김창수	59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7년 02월 28일	1997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4건 492백만원 체납발생
89	김창식	61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15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1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3건 155백만원 체납발생
90	김창해	54	서울 중로구 계동	13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3년 10월 31일	199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32백만원 체납발생
91	김철근	6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4	취득세(부동산)	1997년 11월 30일	1997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9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92	김철호	68	서울 중로구 신영동	13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30백만원 체납발생
93	김춘식	60	충남 아산시 권곡동	14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8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1건 148백만원 체납발생
94	김혜식	55	경기 광주시 오포읍	23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7년 12월 31일	1997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235백만원 체납발생
95	김현철	5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3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1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235백만원 체납발생
96	김형기	61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12월 31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34백만원 체납발생
97	김호성	51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0건 110백만원 체납발생
98	김호영	51	서울 송파구 문정동	197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8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97백만원 체납발생
99	김홍근	75	강원 홍천군 남면	14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148백만원 체납발생
100	김환수	57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1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7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18백만원 체납발생
101	나홍	76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52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526백만원 체납발생
102	노상범	64	경기 화성시 장안면	10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8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7건 104백만원 체납발생
103	노순섭	57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7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10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72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104	노진수	54	서울 금천구 독산동	12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12월 31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28백만원 체납발생
105	노희덕	51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17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12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76백만원 체납발생
106	류길상	5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0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1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07백만원 체납발생
107	마길평	64	서울 서초구 방배동	47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11월 30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1건 470백만원 체납발생
108	맹건영	64	서울 노원구 상계동	17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7건 176백만원 체납발생
109	문영대	47	서울 강북구 수유동	10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09백만원 체납발생
110	문영무	57	서울 중구 황학동	124	취득세(부동산)	2000년 01월 31일	2000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4건 124백만원 체납발생
111	민영백	63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4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446백만원 체납발생
112	민충현	8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1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11월 30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17백만원 체납발생
113	박계동	74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10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1건 135백만원 체납발생
114	박계희	61	경기 광주시 퇴촌면	267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1월 31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1건 267백만원 체납발생
115	박귀윤	69	경기 용인시 상현동	38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03월 31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6건 383백만원 체납발생
116	박미련	65	서울 동작구 사당동	12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4년 02월 28일	1994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8건 128백만원 체납발생
117	박병용	69	서울 강남구 일원동	16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9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4건 162백만원 체납발생
118	박병욱	68	서울 용산구 한남동	33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2월 28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3건 338백만원 체납발생
119	박복기	67	광주 동구 지산동	12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5년 08월 31일	1995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21백만원 체납발생
120	박사례	73	충북 영동군 매곡면	16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04월 30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62백만원 체납발생
121	박석현	49	서울 강서구 염창동	30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5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2건 304백만원 체납발생
122	박세음	60	서울 송파구 오륜동	19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5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4건 190백만원 체납발생
123	박연하	54	충남 논산시 광석면	1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11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08백만원 체납발생
124	박예호	4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11	취득세(부동산)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511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125	박용목	5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4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2월 28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1건 141백만원 체납발생
126	박용석	59	서울 강서구 등촌동	10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1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103백만원 체납발생
127	박윤수	54	서울 용산구 한남동	107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12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07백만원 체납발생
128	박인용	44	서울 용산구 후암동	19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3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0건 199백만원 체납발생
129	박인환	59	서울 상동구 성수1가	15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8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51백만원 체납발생
130	박정현	63	서울 중랑구 중화동	10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11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105백만원 체납발생
131	박종구	60	서울 강북구 수유동	12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24백만원 체납발생
132	박종국	5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12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2건 131백만원 체납발생
133	박찬유	59	경기 파주시 금촌동	16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5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68백만원 체납발생
134	박정원	65	충남 논산시 은진면	16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4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1건 160백만원 체납발생
135	박현수	64	서울 중로구 구기동	26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1건 269백만원 체납발생
136	박형균	53	서울 은평구 녹번동	24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6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243백만원 체납발생
137	박효익	5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부동	37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8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378백만원 체납발생
138	박희창	57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0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8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8건 106백만원 체납발생
139	방여문	50	서울 마포구 성산동	16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10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0건 161백만원 체납발생
140	배경호	51	서울 마포구 도화동	10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11월 30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04백만원 체납발생
141	배윤환	57	서울 도봉구 방학동	1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4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08백만원 체납발생
142	배종열	68	서울 상동구 옥수동	23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11월 30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231백만원 체납발생
143	배호성	67	서울 관악구 남현동	39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8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390백만원 체납발생
144	배호성	63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9월 30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55백만원 체납발생
145	백기화	52	서울 강서구 가양동	10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102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146	백승화	58	서울 성북구 장위동	12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11월 30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22백만원 체납발생
147	백용흠	8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1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1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119백만원 체납발생
148	백중성	59	서울 마포구 망원동	50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08월 31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0건 503백만원 체납발생
149	백행용	64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8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389백만원 체납발생
150	변명관	61	서울 성동구 응봉동	13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6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38백만원 체납발생
151	서근호	89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116	등록세(부동산)	2002년 10월 31일	2002년 등록세(부동산) 등 총2건 116백만원 체납발생
152	서이선	69	경기 파주시 교하읍	12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4년 12월 31일	1994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20백만원 체납발생
153	서창원	4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25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2월 28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254백만원 체납발생
154	서필언	46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0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2월 28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05백만원 체납발생
155	성이준	77	경기 과천시 중앙동	102	등록세(부동산)	1998년 12월 31일	1998년 등록세(부동산) 총1건 102백만원 체납발생
156	성혜자	72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6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09월 30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4건 163백만원 체납발생
157	소재범	59	서울 광진구 구의동	76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4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762백만원 체납발생
158	손광숙	51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0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159	손상호	44	서울 강남구 도곡동	13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3년 12월 31일	200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39백만원 체납발생
160	송시재	73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9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0건 138백만원 체납발생
161	송영제	4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3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7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30백만원 체납발생
162	송영철	50	서울 강남구 대치동	11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10백만원 체납발생
163	송일성	65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438백만원 체납발생
164	송지영	35	서울 마포구 연남동	170	취득세(부동산)	2002년 05월 31일	2002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2건 170백만원 체납발생
165	송철호	65	경기 파주시 광탄면	11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11월 30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12백만원 체납발생
166	신동철	65	서울 종로구 구기동	12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9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26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167	신용길	64	서울 중구 산림동	58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580백만원 체납발생
168	신제덕	62	서울 양천구 신월동	36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5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1건 363백만원 체납발생
169	신창우	75	서울 마포구 신수동	39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3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3건 393백만원 체납발생
170	신현식	41	서울 성북구 돈암동	11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6월 30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총1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171	심상국	59	경기 양주시 광적면	15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1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59백만원 체납발생
172	심용규	74	경기 양주시 광사동	26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6건 269백만원 체납발생
173	안대원	50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236백만원 체납발생
174	안용모	54	서울 강북구 우이동	16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4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64백만원 체납발생
175	안재명	53	서울 강동구 길동	10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01백만원 체납발생
176	양원모	43	경기 수원시 팔달구 배산로2가	14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12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42백만원 체납발생
177	양창중	69	서울 강서구 화곡동	43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3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432백만원 체납발생
178	양한모	85	서울 중구 충무로5가	25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7월 31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251백만원 체납발생
179	엄윤섭	67	서울 송파구 송파동	14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4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41백만원 체납발생
180	여호연	52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7년 06월 30일	1997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3건 113백만원 체납발생
181	염찬영	4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6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8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862백만원 체납발생
182	오만록	56	서울 중로구 계동	14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10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40백만원 체납발생
183	오영환	64	서울 마포구 합정동	12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10월 31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23백만원 체납발생
184	오종만	68	서울 강북구 미아동	32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5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0건 321백만원 체납발생
185	오철석	57	서울 중로구 이화동	2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4년 01월 31일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208백만원 체납발생
186	오화석	58	서울 서초구 우면동	36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5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2건 363백만원 체납발생
187	왕창호	56	서울 노원구 월계동	135	주민세(부동산) 취득세(부동산)	1996년 12월 31일	1996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135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188	우경자	64	서울 송파구 문정동	20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4월 30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2건 205백만원 체납발생
189	원교회	77	서울 서초구 우면동	15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6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0건 158백만원 체납발생
190	유기욱	47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2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191	유기용	46	서울 강남구 개포동	46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4년 06월 30일	1994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9건 461백만원 체납발생
192	유병일	59	충남 논산시 연무읍	146	취득세(부동산)	1998년 09월 30일	1998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146백만원 체납발생
193	유봉길	61	서울 양천구 목동	26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5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2건 267백만원 체납발생
194	유성렬	75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4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49백만원 체납발생
195	유승열	5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8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183백만원 체납발생
196	유시호	51	서울 강남구 도곡동	13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36백만원 체납발생
197	유영국	38	서울 동작구 대방동	1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1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08백만원 체납발생
198	유영일	49	경기 용인시 상현동	10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6월 30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04백만원 체납발생
199	유재후	75	서울 송파구 삼전동	15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11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0건 150백만원 체납발생
200	유체호	47	서울 동작구 대방동	14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1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7건 142백만원 체납발생
201	유홍준	46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9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18백만원 체납발생
202	윤승호	4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1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4월 30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315백만원 체납발생
203	윤영수	55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0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68백만원 체납발생
204	윤영애	65	서울 강남구 도곡동	10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12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05백만원 체납발생
205	윤의상	59	서울 구로구 개봉동	32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320백만원 체납발생
206	윤재준	66	서울 성북구 정릉동	10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6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09백만원 체납발생
207	이강노	46	경기 양평군 용문면	1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12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208	이경범	6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부동	23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5건 235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209	이경섭	80	경기 용인시 상현동	16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2년 10월 31일	199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61백만원 체납발생
210	이광선	48	경기 파주시 법원읍	12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2월 28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24백만원 체납발생
211	이광욱	58	서울 중랑구 면목동	10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01백만원 체납발생
212	이교신	6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5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05월 31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9건 255백만원 체납발생
213	이국희	60	서울 강북구 수유동	15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4월 30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55백만원 체납발생
214	이금용	67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6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9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262백만원 체납발생
215	이기섭	71	서울 강남구 역삼동	28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282백만원 체납발생
216	이기원	6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3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5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총1건 230백만원 체납발생
217	이기홍	4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3건 189백만원 체납발생
218	이명섭	70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3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6월 30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335백만원 체납발생
219	이명자	38	경북 경산시 진량읍	12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08월 31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24백만원 체납발생
220	이민기	54	경기 광주시 오포읍	19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9월 30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92백만원 체납발생
221	이민자	68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23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3월 31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231백만원 체납발생
222	이명철	69	강원 춘천시 사북면	12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4년 01월 31일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25백만원 체납발생
223	이복례	87	경기 용인시 구성읍	3,79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5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3,799백만원 체납발생
224	이봉학	54	전남 목포시 중동1가	511	취득세(부동산)	1996년 07월 31일	1996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53건 511백만원 체납발생
225	이부승	67	서울 광진구 중곡동	14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42백만원 체납발생
226	이상국	65	서울 노원구 하계동	17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0건 179백만원 체납발생
227	이상근	73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2월 28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65백만원 체납발생
228	이상원	5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7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58백만원 체납발생
229	이석조	62	서울 노원구 상계동	16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10월 31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62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230	이석훈	60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27백만원 체납발생
231	이승계	45	서울 중랑구 면목동	20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203백만원 체납발생
232	이영란	80	경기 용인시 구성읍	21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3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210백만원 체납발생
233	이영수	67	충남 천안시 두정동	22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8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223백만원 체납발생
234	이옥녀	82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14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148백만원 체납발생
235	이원규	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23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9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234백만원 체납발생
236	이인자	6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발산동	10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09백만원 체납발생
237	이재길	79	경기 평택시 합정동	11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1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7건 110백만원 체납발생
238	이정남	58	서울 강동구 길동	2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10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208백만원 체납발생
239	이정백	43	서울 구로구 개봉동	23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9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238백만원 체납발생
240	이정식	56	서울 강남구 대치동	1,80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5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0건 1,802백만원 체납발생
241	이제건	51	서울 강남구 신사동	45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8건 459백만원 체납발생
242	이종소	59	충남 당진군 합덕읍	18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10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4건 181백만원 체납발생
243	이종수	53	인천 남구 도화동	26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9건 266백만원 체납발생
244	이종언	46	서울 송파구 삼전동	30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5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301백만원 체납발생
245	이종운	51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06월 30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22백만원 체납발생
246	이창순	67	경기 용인시 죽전동	10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10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06백만원 체납발생
247	이창재	55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22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3건 1,224백만원 체납발생
248	이창호	47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25백만원 체납발생
249	이철용	52	전남 나주시 남매동	10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3년 03월 31일	200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09백만원 체납발생
250	이춘구	46	서울 강서구 가양동	17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7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71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251	이필신	7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17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79백만원 체납발생
252	이형근	52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	주민세(법인세할)	1999년 10월 31일	1999년 주민세(법인세할) 등 총10건 212백만원 체납발생
253	이호석	39	서울 중랑구 면목동	31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03월 31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9건 318백만원 체납발생
254	이호연	64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9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255	이호영	34	서울 중랑구 면목동	1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7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256	이홍근	48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3	취득세(부동산)	2001년 03월 31일	2001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12건 343백만원 체납발생
257	이홍수	61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25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2월 28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1건 250백만원 체납발생
258	임시화	76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19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6년 03월 31일	1996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90백만원 체납발생
259	임철순	69	서울 용산구 이촌동	26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8건 264백만원 체납발생
260	임한수	62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6	취득세(부동산)	1998년 10월 31일	1998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126백만원 체납발생
261	임현규	55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6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78백만원 체납발생
262	장기영	48	서울 중구 광희동2가	15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1월 30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9건 159백만원 체납발생
263	장병길	53	서울 강북구 수유동	1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4년 01월 31일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08백만원 체납발생
264	장병오	74	서울 노원구 공릉동	21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211백만원 체납발생
265	장영자	62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6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0건 586백만원 체납발생
266	장태모	66	경기 광주시 실촌읍	10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4월 30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08백만원 체납발생
267	전경환	64	경기 하남시 신장동	635	주민세(법인세할)	1996년 07월 31일	1996년 주민세(법인세할) 등 총2건 635백만원 체납발생
268	전길동	64	서울 강남구 대치동	2,44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2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2,443백만원 체납발생
269	전동식	48	서울 강서구 둔촌동	24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241백만원 체납발생
270	전민순	71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5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06백만원 체납발생
271	전미호	58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221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4월 30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221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272	진병달	59	울산 중구 성안동	20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5년 06월 30일	1995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총1건 207백만원 체납발생
273	진상복	43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3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35백만원 체납발생
274	정병일	61	경기 의정부시 가농동	12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5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5건 120백만원 체납발생
275	정상열	72	경남 산청군 생초면	24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12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244백만원 체납발생
276	정영창	53	서울 은평구 불광동	15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55백만원 체납발생
277	정원근	44	서울 용산구 한남동	17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8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72백만원 체납발생
278	정일동	59	경기 안성시 공도읍	85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8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854백만원 체납발생
279	정태수	83	서울 종로구 가회동	1,3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02월 28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0건 1,311백만원 체납발생
280	정한모	71	서울 상동구 성수1가	598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8년 12월 31일	1998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1건 598백만원 체납발생
281	정화영	72	서울 마포구 서교동	16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6월 30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63백만원 체납발생
282	정효식	62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10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07백만원 체납발생
283	조규복	53	서울 강동구 둔촌동	10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5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02백만원 체납발생
284	조동섭	55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1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8월 31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10백만원 체납발생
285	조병준	66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11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2월 28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286	조순길	63	서울 강북구 수유동	138	취득세(부동산)	1999년 11월 30일	1999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8건 138백만원 체납발생
287	조일성	69	서울 광진구 중곡동	24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4월 30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249백만원 체납발생
288	조정근	35	서울 양천구 신월동	24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10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241백만원 체납발생
289	조호만	47	인천 부평구 청천동	11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5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7건 112백만원 체납발생
290	주재진	49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5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3건 106백만원 체납발생
291	차승섭	49	경기 가평군 청평면	10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2월 28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08백만원 체납발생
292	천남출	91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3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292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293	최강일	6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3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46백만원 체납발생
294	최금수	63	서울 양천구 신월동	294	취득세(부동산)	2000년 03월 31일	2000년 취득세(부동산) 총1건 294백만원 체납발생
295	최달순	68	서울 중로구 창성동	128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6월 30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28백만원 체납발생
296	최도선	54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3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03백만원 체납발생
297	최병각	61	서울 중랑구 망우동	25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2년 03월 31일	2002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1건 257백만원 체납발생
298	최상준	54	서울 송파구 문정동	22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12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226백만원 체납발생
299	최순기	56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7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41백만원 체납발생
300	최순영	67	서울 시초구 양재동	3,61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2월 28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8건 3,616백만원 체납발생
301	최원준	52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6년 01월 31일	1996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9건 446백만원 체납발생
302	최재호	57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3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6월 30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03백만원 체납발생
303	최종식	63	서울 강남구 도곡동	28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3년 09월 30일	200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286백만원 체납발생
304	최준석	68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111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7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111백만원 체납발생
305	최철	76	경기 용인시 상현동	19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10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1건 193백만원 체납발생
306	최춘근	64	서울 중로구 승인동	14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8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4건 142백만원 체납발생
307	최춘미	46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6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1년 07월 31일	2001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8건 146백만원 체납발생
308	최명균	5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0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2월 28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00백만원 체납발생
309	최행남	8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7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3년 12월 31일	199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174백만원 체납발생
310	한명호	65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22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9년 01월 31일	1999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15건 225백만원 체납발생
311	한병후	78	대전 서구 괴정동	26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5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4건 262백만원 체납발생
312	한상만	50	경기 구리시 인창동	130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3년 08월 31일	199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30백만원 체납발생
313	한상필	66	경기 광주시 오포읍	196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1년 05월 31일	2001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3건 196백만원 체납발생

번호	성명	연령	체납자주소	총채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314	한석보	40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4년 01월 31일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2건 122백만원 체납발생
315	한승희	72	경기 구리시 토평동	405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10월 31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총1건 405백만원 체납발생
316	한웅	68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2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8년 06월 30일	1998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7건 202백만원 체납발생
317	한현수	74	충남 천안시 백석동	17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6건 173백만원 체납발생
318	함상욱	73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052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8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4건 1,052백만원 체납발생
319	함정희	67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4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9년 04월 30일	1999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2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320	허경	5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24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1992년 08월 31일	199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5건 244백만원 체납발생
321	현윤길	49	경북 경산시 하양읍	155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3년 01월 31일	2003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총1건 155백만원 체납발생
322	홍강표	5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발산동	139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2년 08월 31일	2002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39백만원 체납발생
323	홍대기	49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9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0년 03월 31일	2000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7건 109백만원 체납발생
324	홍순산	47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	주민세(양도소득세할)	2003년 03월 31일	2003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3건 103백만원 체납발생
325	황교일	61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57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3월 31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3건 157백만원 체납발생
326	황보경조	63	서울 송파구 석촌동	114	주민세(종합소득세할)	2000년 09월 30일	2000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총6건 114백만원 체납발생
327	황익수	60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7	주민세(양도소득세할)	1997년 07월 31일	1997년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총13건 377백만원 체납발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61호
 어린이미술마당 위탁운영자 선정
 우리시에서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어린이미술마당”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 시설개요

- 가. 시설명 : 어린이미술마당
- 나. 위치 : 어린이대공원역내(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지하1층)
- 다. 규모 : 423m²(128평)
- 라. 공간형태 : 전시장, 미술체험실(함께하기방·놀이방·만지기방) 등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

3. 신청자격

-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를 두고 있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포함)
 ※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신청자에 한하여 위탁제안서 접수

4. 사업설명회

- 가. 일시 : 2006. 12. 26(화) 10:00
- 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5층 문화과 (서울시 종로구 태평로1가 25)
- 다. 현장방문 :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

나. 정비 및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역 어린이미술마당(11:00~)
- ※ 사업설명회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접수 요망(☎ 2171-2565~7)
- 5. 신청기간 : 2006.12.26(화)~2007. 1. 5(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 6. 신청접수처 : 서울특별시 문화과 (한국프레스센터 5층)
 ※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18시한 문화과 도착분)
-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문화과 (☎ 2171-2565~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1868호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1.15)로 승인된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가. 계획의 개요

- 위치 : 서대문구 남, 북가좌동 일대
- 면적 : 1,073,000m²
- 개발방식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혼용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1,073,000	-	1,073,000		100.0%
계획 정비 구역	합계			570,984	증)95,863	666,847		62.2%
	주택 재개발	가재울뉴타운 1구역	북가좌동 75번지 일대	19,782	-	19,782		1.8%
		가재울뉴타운 2구역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25,874	-	25,874		2.4%
		가재울뉴타운 3구역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39,051	감) 152	238,899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22.3%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획 정비 구역	주택 재개발	가재울뉴타운 4구역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6,277	감) 3,397	282,880	구적오차에 따른 면적변경	26.4%
		가재울뉴타운 5구역	남가좌동 352번지 일대	-	증)52,289	52,289	구역요건충족으로 인한 변경	4.9%
		가재울뉴타운 6구역	남가좌동 352번지 일대	-	증)47,123	47,123	사업방식변경 (재건축→재개발)	4.4%
계획 관리 구역	합 계			178,900	감)99,412	79,488		7.4%
	주택재개발	계획관리 1구역	남가좌동 352번지 일대	52,289	감)52,289	-	계획정비구역으로 변경	-
	주택재건축			47,123	감)47,123	-		
	주택재건축	계획관리 2구역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9,488	-	79,488		7.4%
자율 정비 구역	합 계			323,116	증) 3,549	326,665		30.4%
	지구단위 계획	소 계		98,600	감)26,100	72,500		6.7%
		남가좌지구	남가좌동 295번지 일대	72,500	-	72,500		6.7%
		북가좌지구	북가좌동 300번지 일대	26,100	감)26,100	-		-
	존치	존치	-	224,516	증)29,649	254,165		23.7%

다. 계획정비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변경)결정조사

구역번호	구분	위치	면적 (m ²)	용적률 (%)	층 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정비유형	비 고
가재울 뉴타운 3구역	기정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39,051	190	29층이하	50	2	전면개발	평균 (235%이하)
	변경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38,899	190	35층이하	50	2	전면개발	
가재울 뉴타운 4구역	기정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6,277	190	27층이하	50	2	전면개발	
	변경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2,880	190	32층이하	50	2	전면개발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신설	남가좌동 352번지 일대	52,289	190	20층이하	50	2	전면개발	
가재울 뉴타운 6구역	신설	남가좌동 352번지 일대	47,123	190	20층이하	50	2	전면개발	

※ 정비예정구역 내 구역별·세대별 평균 15층을 정비예정구역 내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거 평균 16층으로 변경(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만 제한)

라. 기반시설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가1	공원	가로공원	북가좌동 77-4대 일원	1,150	
변경	경1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77-4대 일원	1,150	
기정	가2	공원	가로공원	북가좌동 362-3도 일원	818	
변경	경2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362-3도 일원	818	
기정	가3	공원	가로공원	북가좌동 100-45대 일원	1,294	
변경	경3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00-45대 일원	1,294	
기정	가4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237-250도 일원	843	
변경	경4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37-250도 일원	843	
기정	가5	공원	가로공원	북가좌동 420-11대 일원	839	
변경	경5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420-11대 일원	839	
기정	가6	공원	가로공원	북가좌동 421-22대 일원	616	
변경	경6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421-22대 일원	616	
기정	가7	공원	가로공원	북가좌동 136-45대 일원	2,734	
변경	경7	녹지	경관녹지	북가좌동 136-45대 일원	2,734	
기정	가8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241-50대 일원	1,338	
변경	경8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41-50대 일원	1,338	
기정	가9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175-177대 일원	340	
변경	경9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175-177대 일원	340	
기정	가10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188-21대 일원	470	
변경	경10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188-21대 일원	470	
기정	가11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115-27대 일원	1,050	
변경	경11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115-27대 일원	1,050	
기정	가12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255-25대 일원	638	
변경	경12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255-25대 일원	638	
기정	가13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152-4대 일원	1,951	
변경	경13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152-4대 일원	1,951	
기정	가14	공원	가로공원	남가좌동 256-16대 일원	585	
변경	경14	녹지	경관녹지	남가좌동 256-16대 일원	585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2반(☎ 2171-2642),

서대문구 균형발전사업반(☎ 330-1633)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고 시

2006년 12월 21일
종 로 구 청 장

◆ 종로구고시 제2006-58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2호(2006.9.23)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으로 결정된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1994.6.7)로 결정된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 도시설계지구)을 소극장이 밀집된 서울의 대표적 공연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의 여건변화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임.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종로구 대학로 일대
 - 면 적 : 477,346㎡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조서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율곡로, 창경궁로, 대학로 일대	1,018,300	1994. 6. 7	1994. 6. 7
변경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학로 일대	477,346	-	구역분리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창경궁로, 율곡로 주변 일대	350,207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학로 일대	477,3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적오차면적 381,797㎡는 조서상 면적 감소된 것으로 정정 • 기존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창경궁로 및 율곡로 주변에 위치한 지역(면적 350,207㎡)은 구역을 분리하여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기존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구적오차 정정면적과 구역분리로 제척된 율곡로 구역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 286,296㎡)와 혜화동 및 동송동 일대 일부토지를 추가편입(면적 191,050㎡)하여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 ※ 477,346㎡=1,018,300-(381,797+350,207)+191,050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창경궁로, 율곡로 주변 일대	350,207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77,346	-	477,346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817	-	32,817	6.9	서울시고시 제2003-368호 (2003. 11. 2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96,350	196,350	41.1	
		-	72,333	72,333	15.2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4,822	-	134,822	28.2	
	준주거지역	13,064	-	13,064	2.7	건설부고시 제169호 (76. 10. 28)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7,960	-	27,960	5.9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혜화동 90~연건동 178	38,000	950	20(양측)	'82.2.18	
기정	②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내자동~광희동2가	10,400	4,750	-	'82.4.22	
기정	③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원남동~우이동 (미아로)	295,200	9,000	20(양측)	'82.2.18	

■ 방화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방화지구	명륜4가~성북동	21,888	1,008	12(양측)	'63.12.13	
기정	②	방화지구	퇴계로~효제동	27,960	-	-	'63.12.13	

■ 문화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문화지구	종로구 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연건동, 명륜동 일대	446,569	2004. 5. 20.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A	40		1,500 (992)	중로5가 (광2)	혜화동 로타리	일반 도로	-	'78.6.15	
기정	대로	1	55	35	-	3,550 (291)	혜화동광장	미아 삼거리	일반 도로	-	'78.10.2	
기정	대로	2	59	30	-	1,200 (300)	원남동 네거리	혜화동광장	일반 도로	-	'78.10.2	
기정	중로	2	1	15	-	270	광로 2-A	소로 1-C	일반 도로	-	'52.3.25	
기정	중로	2	13	15	-	430 (63)	혜화동 광장	성북동고개	일반 도로	-	'77.2.4	
기정	소로	1	A	10	-	250	연건동 209	연건동 128	일반 도로	-	'76.5.25	
기정	소로	1	B	10	-	75	광로 2-A	동숭동 3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1	C	10	-	257	광로 2-A	대로 2-59	일반 도로	-	-	
변경	소로	1	C	10	특수 도로	257	광로 2-A	대로 2-59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2	A	8	-	180	광로 2-A	소로 2-B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B	8	-	631	소로 2-C	이화동 149-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C	8	-	220	동숭동 31-2	동숭동 25-7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동승1	8	특수 도로	141	광로 2-A	소로3- 동승5	보행자 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57	6	-	160 (72)	이화동 90-1	충신동 57-1	일반 도로	-	'63.7.1	
기정	소로	3	65	6	-	120	동숭동 30	동숭동 2-4	일반 도로	-	'63.7.1	
기정	소로	3	A	6	-	215 (38)	명륜4가 206-47	명륜4가 144	일반 도로	-	'63.7.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B	6	-	130 (38)	명륜2가 43	명륜2가 167	일반 도로	-	'77.8.24	
기정	소로	3	C	6	-	70 (57)	명륜2가 8-15	명륜2가 8-7	일반 도로	-	'77.3.16	
기정	소로	3	D	6		140 (65)	명륜2가 8-1	명륜2가 43-1	일반 도로	-	'77.3.16	
기정	소로	3	E	6	-	131 (29)	소로 3-동승10	동승동 130-38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F	6	-	237 (114)	이화동 128	이화동 12	일반 도로	-	'63.7.1	
신설	소로	3	동승1	6	특수 도로	287	소로 2-동승1	소로 3-동승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2	6	특수 도로	132	소로 3-동승1	소로 3-동승5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3	6	특수 도로	90	소로 2-동승1	소로 3-동승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4	6	특수 도로	90	소로 2-동승1	소로 3-동승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5	6	특수 도로	320	소로 2 - C	소로 3-동승1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6	6	특수 도로	202	소로 2-동승1	소로 3-동승5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7	6	특수 도로	27	소로 2-동승1	동승동 1-11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8	6	특수 도로	91	소로 2-동승1	소로 3-동승6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9	6	국지 도로	116	소로 2-A	소로 3-동승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10	6	국지 도로	103	소로 2-B	동승동 129-13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동승11	6	국지 도로	108	소로 2-A	소로 3-동승5	일반 도로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1 - C	소로 1-C	변경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대명거리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2-동승1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3-동승1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3-동승2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	소로3-동승3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 • 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3-동승4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3-동승5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3-동승6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	소로3-동승7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소로3-동승8	신설	• '차없는 거리'를 시행중인 동승동 일대의 가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
-	소로3-동승9	신설	• 소극장이 밀집한 동승동 주요지역의 현황도로를 '차없는 거리'와 연계하여 보행친화형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기본시설로 결정
-	소로3-동승10	신설	• 동승동 이면지역과 낙산공원 접근로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현황도로를 도시기본시설로 결정
-	소로3-동승11	신설	• 소극장이 밀집한 동승동 주요지역의 현황도로를 보행친화형으로 '차없는 거리'와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도시기본시설로 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명륜동2가 21-22	324	-	324	'95.12.25	
기정	②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승동 192-9	839.7	-	839.7	'03.11.25	
기정	③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승동 31-35 외2	540.7	-	540.7	'02. 2. 5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마로니에	근린공원	동승동 1-124 일대	7,800	감)1,998	5,802	'96. 12. 1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1호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마로니에	감)1,998㎡	-대학로(광로2류)와 중복되어 불합리하게 결정된 부분이 보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성현황을 반영하여 변경 결정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이화동 3-2번지	-	증)622	622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증) 622㎡	-이화장길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이화장 전면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공지 설치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로구 혜화동 90-7	21,106	-	21,106	'87.3.4	동성중·고교
기정	②	학교	대학교	종로구 연건동 28-2 외 4필지	98,719 (19,276)	-	98,719 (19,276)	'87.3.4	서울대학교
기정	③	학교	대학교	종로구 동승동 161	16,045	-	16,045	'86.4.29	동승동본관 (방송통신대)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문예회관)	동승동 1-130 일대	9,713.8	-	9,713.8	'86. 3. 11	예술관 및 미술관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 주변여건과 개발현황이 유사한 필지들을 계획의 기본단위로 구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간선가로와 대규모시설로 구분되는 개발특성에 따라 5개 대권역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전면도로폭을 기준으로세분
 - N(혜화로타리 북측일대), E1(동성중고, 동승동 소극장 밀집지역 일대), E2(방송통신대, 동승동 및 이화동 일대), W1(대명거리 및 소나무길 일대), W2(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동 일대)
 - a(폭20m 이상 도로변), b(폭6m 이상~20m 미만 도로변), c(폭6m 미만 도로변)
- 따라서 혜화로타리 북측에 위치하고 폭 6m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의 가구명은 'N-c'가 됨
- 구역내 대규모 시설(학교, 공공시설 등)은 별도의 가구로 관리함

구 분	가 구 명	위 치	비 고
a권역 (폭 20m이상 도로변)	E1-a	동승동 1-28 일대	
	E2-a	이화동 121 일대	
	N-a	혜화동 64-1 일대	
	W1-a	명륜동 41-4 일대	
	W2-a	연건동 39 일대	
b권역 (폭 6m이상~20m미만 도로변)	E1-b	동승동 1-67 일대	
	E2-b	이화동 57 일대	
	N-b	혜화동 53-28 일대	
	W1-b	명륜4가 7 일대	
c권역 (폭 6m미만 도로변)	E1-c	혜화동 163-33 일대	
	E2-c	동승동 192-10 일대	
	N-c	혜화동 26-26 일대	
	W1-c	명륜4가 66-2 일대	
F권역 (시설정비구역)	E1-F1(동성중고등학교 일대)	혜화동 90-7 일대	
	E1-F2(마로니에 공원 일대)	동승동 1-124 일대	
	E2-F(방송통신대학 일대)	동승동 199-48 일대	
	W1-F(혜화동 사무소)	명륜4가 1	

구 분	가 구 명	위 치	비 고
F권역 (시설정비구역)	W2-F1 (서울대학교)	연건동 28-2 일대	
	W2-F2(한국국제협력단 일대)	연건동 128 일대	
S권역 (특별계획구역)	W2-S(홍익대학교)	연건동 128-8 일대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변(도로폭 20m 이상) 동승동 일대(도로폭 6m 이상) 	600~90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이면지역 	-	600㎡

■ 최소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소개발규모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변 동승동구간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변 기타지역 동승동 이면지역(도로폭 6m이상) 	150~30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이면지역 	90~200㎡	60㎡

■ 대지분할가능선 결정(변경)조서

가 구	위 치	면 적(㎡)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N-a	명륜2가 8	1,909	530 1,379	•이면지역의 과대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분할을 권장함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도서참조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도서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함.
- 문화지구 지정 등 타지역과 대비되는 특수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용도분류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세분함.

구 분		용 도
세분전	아목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세분후	아-1목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급분류에 의해 '전체 이용 가능'한 게임물 또는 영상물 등을 제공하는 업소
	아-2목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급분류에 의해 '18세 이상 이용 가능'한 게임물 또는 영상물 등을 제공하는 업소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전체 구역에 대하여 불허함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건축법과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용도분류 외 발생할 수 있는 신규용도는 '기타용도'로 분류함 (기타용도의 허용여부는 대학로 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기 정〉

기호	U - 1	U - 2	U - 3	U - 4
상업 지역 / 노선 상업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체불허용도 - 1종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 상업지역내 허용용도 중 다음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 시설 제외) •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 운수시설 • 동물관련시설 • 통신촬영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제외) • 관람집회시설 중 음식점 • 운동시설 • 종교시설 ▶ 1층전면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자재, 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화공식품 등의 유사용도 -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체불허용도 U-1과 동일 ▶ 1층전면 불허용도 U-1과 동일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및 상업관련시설 - 문화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내에서의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제외한 용도는 입지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주상혼용 등의 복합용도 제외) - 기숙사 - 관람집회시설 중 음식점 -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 운수시설 -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용도이외는 입지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중 바다면적 합계 1,000㎡미만으로서 다음 용도에 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마켓, 일용품등의 소매점으로 500㎡미만 • 대중음식점, 제과점, 다방 - 2층이하의 연립주택 - 노유자시설 - 근린공공시설
기호	U - 5	U - 6	U - 7	U - 8
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체불허용도 - 1종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 주거지역 허용용도 중 다음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단, 관광숙박시설 제외) • 관람집회시설 중 음식점 • 운수시설 • 동물관련시설 • 통신촬영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제외) • 운동시설 • 종교시설 ▶ 1층전면 불허용도 상업지역 U-1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전체불허용도 U-5와 동일 ▶ 1층전면 불허용도 U-5와 동일 ▶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내에서의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제외한 용도는 입지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 숙박시설 - 관람집회시설 중 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내에서의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제외한 용도는 입지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

〈변 경〉			
기호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비 고
U-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마목의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아-1목,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운동시설 • 창고시설 나목의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아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관리기계법에 의한 차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동송동 이면부 일반주거지역
U-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마목의 종교집회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 투표소 • 운동시설 • 창고시설 나목의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아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관리기계법에 의한 차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아-1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이화동 이면부 일반주거지역

기호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비 고
U-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실내낚시터 및 골프연습장 -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의 예식장, 마권장의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 창고시설 나목의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아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관리기계법에 의한 차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아-1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명륜동 이면부 일반주거지역
U-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마목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아-1목,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나목의 예식장, 마권장의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 아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관리기계법에 의한 차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기타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간선가로변 일반주거지역

기호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비 고
U-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 중 실내낚시터 및 골프연습장 -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목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다목의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의 도매시장 • 운수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다목의 공항시설 - 라목의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중 다목의 장례식장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기타용도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아-1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연건동 준주거지역
U-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 중 실내낚시터 및 골프연습장 -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단란주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타목의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목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다목의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의 도매시장 • 운수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다목의 공항시설 - 라목의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중 다목 장례식장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다목의 기타 • 위탁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기타용도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아-1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간선가로변 일반상업지역

■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용도	위치	권장층수			
		지하층	저층부 (1~2층)	중층부 (3~4층)	상층부 (5층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지역	○	○	○
	전시장	전지역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민간 부분	• 동효주차장 일대(동승동) • 이화주차장 일대(이화동) • 혜화동 22-65 일대	주차장	◎	주차장
	공공 부분	• 동성중고등학교 일대(혜화동) • 방송통신대학교 일대(동승동)	주차장		

주1) 특화가로 조성구역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전용면적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용문화건축물”을 권장함

주2)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시설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항목 중 당해 지역의 허용용도를 권장

주3) 권장용도 중 공공부분 주차장의 설치규모는 다음의 산출식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정해지는 규모 이상을 설치할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소숫점 이하는 절사하며 기존 주차장을 입체화 하는 경우와 동성중고등학교는 제외함)

공공주차장 설치규모(대)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의무주차설치대수] + [건축물연면적(㎡) × 3.55 ÷ 1,000]

■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구	위 치	지정 용도	비 고
W2-S	연건동 128-8	공연장(600석 이상) 및 공연 연습실(600㎡ 이상)	홍익대학교 특별계획구역
		전시장(100㎡ 이상)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공공주차장 설치	
W2-F1	명륜동 4가 97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공공주차장 설치	서울대학교 시설정비구역

주1) 공공주차장의 설치규모는 다음의 산출식에 따라 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정해지는 규모 이상을 설치할 경우 지정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소숫점 이하는 절사)

공공주차장 설치규모(대)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의무주차설치대수] + [건축물연면적(㎡) × 3.55 ÷ 1,000]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및 높이

- 대학로의 지역현황 보전을 통해 지역의 맥락을 지속하고 문화환경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건축물 개발밀도 및 높이계획을 수립
- 낙산을 배경으로한 시각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현황층수(3~8층) 위주의 건축물 규모를 유지하는 건축물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
- 상업화된 주거지역 현황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상황을 검토하였으나 지가상승에 따른 임대료의 동반상승으로 소극장 등 문화시설의 퇴출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및 제55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따르도록 함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 적 륜	비 고
일반상업지역(비도심)	8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일반상업지역(도심)	600% 이하	
준주거지역	4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기 정〉

구 분	기 호	규 제 내 용	비 고
최고높이제한	H-1	2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8m 이하	
	H-2	5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20m 이하	
	H-3	5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20m 이하	
최저높이제한	H-4	5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18m 이상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 타
	기 준	기 호	
일반상업지역(4대문밖)	40M(10층) 이하	H-5	
일반상업지역(4대문안) 준주거지역	32M(8층) 이하	H-4	
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로폭 20m 이상)	24M(6층) 이하	H-3	
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로폭 6~20m 이상)	20M(5층) 이하	H-2	
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로폭 6m 이하)	16M(4층) 이하(주2)	H-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사선제한 적용	-	

주1) 전면도로 사선제한을 배제한 최고높이 지정

주2) 건축법 제51조에 따른 사선제한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0M(5층) 이하까지 건축가능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지정선 결정(변경)조서

가구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N-a	혜화로터리 북측	-	건축지정선 : 대지경계선	“로터리형” 도시형태 보전
W1-b	대명거리(남)	건축한계선 : 1m	건축지정선 : 대지경계선	가로 연속성 유지
	대명거리(북)	건축한계선 : 1m	건축지정선 : 1m	가로 연속성 유지

■ 건축한계선 결정(변경)조서

가 구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E1-a	간선도로변	1m, 3m	변경 없음	
E1-b E1-c	이면지역	-	1m, 2m	
E2-a	간선도로변	1m, 3m	3m 지역 추가	대학로변 방통대구간의 기존 도시설계(공공조경) 대체 반영
E2-b E2-c	이면지역	-	1~2m	
N-a	간선도로변	1m, 3m	변경 없음	
N-b N-c	이면지역	-	1m	
W1-a	간선도로변	3m	변경 없음	
W1-b W1-c	이면지역	-	0.5~4m	보차혼용통로 확보 등
시설정비구역	간선도로변	3m	변경 없음	
	이면지역	-	3m	서울대학병원 북측가로변 차도 확보
특별계획구역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 3m	변경 없음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용도지역	계 획 내 용	
		권장 사항	금지 사항
건축물의 형태	중층부, 상층부 입면 형태	• 천공형 입면	• 커튼월형 입면 • 사선 절제형
	저층부 형태	• 1층 벽면 면적의 50% 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	-

구 분	용도지역	계 획 내 용	
		권장 사항	금지 사항
건축물의 외관	1층, 지붕층 높이선	• 주변 건축물과 조화	-
	건축물의 전면 재료	• 적벽돌, 전벽돌 • 또는 구역내 미관건축물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	• 반사형재료(알루미늄 등), 화강석(포천석, 마천석 등)을 50% 이상 사용
	건축물의 전면 색채	-	• 원색 계열의 색채
	야간조명	• 벽면조명	-
기타사항	옥외광고물	• 종류에 관계없이 업소당 2개 이내 • 가로형간판: 전면폭이내(가로), 80cm이내(세로) • 세로형간판: 80cm이내(돌출), 층고이내(세로) • 인자내용(글씨, 그림 등)의 크기: 간판크기의 3/8 이하로 함	• 원색계열 금지(면선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 계열) • 네온사인, 점멸광고물, 창문이용 간판
	미관건축물	-	• 1/4이상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 • 미관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

주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권장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미관건축물 보전구역(도면표기)
- 특화가로 조성구역(도면표기)
- 기존 건축물 중 주요 외장재료가 적벽돌인 건축물

주2) 옥외광고물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권장)	E1-a	동송동 1-115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E1-b	동송동 1-42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동송동 1-5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동송동 1-83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동송동 1-93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동송동 1-136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동송동 1-147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E2-b	동송동 169-9, 199-1, 이화동 149, 연건동 177-1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N-a	해화동 64-1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내 공지	쌈지형 공지 (권장)	W1-b	명륜동 2가 41-9	-	신설	기존 공지 활용
		W2-a	연건동 128	공공공지	변경	기존 도시설계 (공공공지)를 반영
		W2-a	명륜동 4가 97, 연건동 28-2	공공공지	변경	
	쌈지형 공지 (지정)	E1-b	혜화동 179-4	-	신설	
		W1-a	명륜동4가 1	-	신설	
	보차혼용도로 (지정)	E1-b	동승동 1-37	3m	4m	
			동승동 1-38	3m	2m	

주1) "쌈지형공지(권장)"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없이 대지 중 건축되지 않은 공간을 활용하여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는 공지를 말함
주2) "쌈지형공지(지정)"라 함은 건축물의 신축시 일반인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 대지내 공지를 말한다.

나) 차량동선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학로, 율곡로, 동소문로, 창경궁로 등 주요 간선가로변	단, 기존 출입구에 한하여 진출입 가능

주1)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연결한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할 수 있음.
주2)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할 경우, 노외주차 무상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주차장설치비용 1/2를 감액 받을 수 있음.

다) 주차계획

구 분	가구번호	위 치	비 고	
지정 용도	W2-S	연건동 128-8	홍익대학교 지하(특별계획구역)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공공주차장 설치
	W2-F1	명륜동 4가 97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하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공공주차장 설치
권장 용도	E1-F1	혜화동 90-7, 동승동 1-174 일대	동성중고등학교	학교 운동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설치 권장
	E2-F	동승동 181,181-2 일대	방송통신대학, 국제교육진흥원 등	건축물 신축시 공공주차장 설치 권장
	E1-a	동승동 1-143, 1-181, 1-142	동효주차장, 정일주차장	구역내 서로 인접한 민영주차장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존 주차장의 입체화 권장
	E2-b	이화동 190 외	이화주차장	기존 주차장의 입체화 권장
	N-b	혜화동 22-65	기존주차장	기존 주차장의 입체화 권장

주1) 권장용도로 설치되는 공공주차장의 경우, 높이와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홍익대학교 특별계획구역

■ 지정목적

- 대학로의 관문에 해당되는 입지적 상징성과 기존 대학로 지역의 건축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별도 관리하고자 함.

- 특별계획구역 개발과 함께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공공주차장)과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연습장)을 마련하기 위함

■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28-8 외 2필지
- 면 적 : 6,400m²

■ 계 획 내 용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용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 전면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 중 실내낚시터 및 골프연습장 - 아2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자목의 장의사, 총포판매소, 동물병원 - 카목의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전시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라목의 관람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목의 도매시장 - 라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바목의 공항시설 - 사목의 향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중 다목의 장례식장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기타용도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목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아1목의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 타목의 노래연습장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600석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공연연습장 : 600m² 이상 ● 공공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차장 설치규모(대)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의무주차설치대수] + [건축물연면적(m²) × 3.55 ÷ 1,000] ※ 상기 지정용도를 기준에 맞게 모두 수용하여야 함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구 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상업지역 : 600% 이하 준 주거지역 : 400%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m (15층) 이하 ※ 단, 중심지미관지구에 포함되는 대지는 32m (8층) 이하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조성된 간선가로(대학로 및 율곡로)변 담장개방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정용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5. 인센티브 및 패널티				
가) 인센티브				
구 분	항 목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대지에 관한 사항	획지단위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지선 준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M(1층) 높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거나 공공주차장 설치권장을 위해 공동건축을 권장한 필지는 제외
	공동개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수시 		
용도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시설 : 바다면적 300㎡이상 전시장 시설 : 바다면적 100㎡이상, 1~2층에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4M(1층) 높이완화 또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완화대수 = 문화시설 바다면적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개발규모 완화는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000㎡, 기타용도지역의 경우 1,20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 문화시설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문화시설로 등록해야한다. 타 용도로 변경시 패널티 적용 세계 및 용자 지원(문화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문화건축물 : 특화가로 조성구역에 입지(도면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M(1층) 높이완화 또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완화 완화대수 = 문화시설 바다면적 / 100㎡ 최대개발규모제한 완화 	
	공공주차장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M(1층) 높이 완화 최대개발규모제한 완화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미관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침 준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및 용자 지원(문화지구)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지침 준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비 지원(문화지구)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쌈지형 공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제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 지원(문화지구)
	쌈지형 공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주차설치기준 완화 완화대수 = 조성면적 /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선후퇴로 인해 발생한 공지는 조성면적에서 제외 주차장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용도로 전용시, 패널티 적용

구 분	항 목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보차혼용 통로	• 조성시	• 의무주차설치기준 완화 • 완화대수 = 제공면적 / 18㎡	• 건축선후퇴로 인해 발생한 공지는 조성면적에서 제외 • 공공의 이용을 제한 할 경우 페널티 적용
주차·차량 동선에 관한 사항	보행자 전용도로와 인접한 대지	• 신축시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의무주차설치기준을 100% 완화(단, 설치기준의 50%에 해당하는 비용 납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의 2에 근거
	차량출입 불허구간과 인접한 대지	• 신축시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 무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대신	

주1) 높이제한 완화의 최대한도 :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층수완화의 총 합계는 8M(2층)을 넘을 수 없다.

나) 페널티

구 분	항 목	페널티 조건	페널티 내용	
			지구단위계획	문화지구 관리계획
대지에 관한 사항	최대개발 규모	최대개발규모 이상의 대지에서의 개발	용적률 제한 : 용적률 산정 시 최대개발규모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 용도	권장용도 중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설치하여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건축물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연장 또는 전시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을 경우	-	대학로 문화지구로부터 받은 세제지원 및 융자금 회수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쌈지형 공지 (권장)	조성된 공지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주차 등)로 사용하는 경우	-	대학로 문화지구로부터 지원된 융자금 회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미관건축물	미관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을 허가 없이 변경하였을 경우	-	대학로 문화지구로부터 받은 세제지원 및 융자금 회수

관계도서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도시계획과(☎ 731-1418)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중구고시 제2006-76호

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6-343호(2006. 6.29)로 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된 중구 을지로6가 21-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대하여, 본 지하도로와 을지로6가 21-11번지 외 39필지에 신축중인 동대문패션TV 쇼핑물간 지하층연결로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건설관리과(☎ 2260-401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21-11번지 일대(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사업(지하도로)
- 2) 명 칭 : 동대문패션TV쇼핑몰~을지로 지하상가간 지하층연결로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지하층연결로 설치(변경 없음)

폭(m)	연 장(m)	면 적(m ²)	높 이(m)	비 고
10.6	38.0	573.1	+6.1~12.8	지하2층~지상1층(일부 입체적 결정)

라. 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 없음)

- 1) 주 소 :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7 한림빌딩 7층
- 2) 성 명 : (주) 디엠씨 플래닝 대표이사 장평열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 당 초 : 실시계획인가일~2006.12.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2007.0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

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 따로붙임
(변경 없음)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관한 권리이전계획』~같음(변경 없음)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관리과(☎ 2260-4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층 연결로 설치를 위한 재산조사

□ 사업명 : 동대문패션TV쇼핑몰과 을지로지하상가간 지하층연결로 설치공사

구분 연번	재산소유 구 분	소 재 지	지목	지적 (m ²)	연결통로면적			고 저(m) (평균해수면)	재산관리 현황
					면적(m ²)	길이(m)	폭(m)		
합계	18필지			3,983	573.08	38	10.6	E L 10.51~20.31	
소계	7필지			3,278	323.82				
1	공공용지	을지로6가 21-3	대	29.8	1.65				(주)디엠씨플래닝
2	공공용지	21-17	대	33.7	24.10				(주)디엠씨플래닝
3	공공용지	21-11	도	196.0	100.41				건설교통부
4	공공용지	21-18	도	50.2	40.60				(주)디엠씨플래닝/ 건설교통부
5	공공용지	21-30	대	399.0	4.17				(주)디엠씨플래닝

구분 연번	재산소유 구 분	소 재 지	지목	지적 (㎡)	연결통로면적			고 저(m) (평균해수면)	재산관리 현황
					면적(㎡)	길이(m)	폭(m)		
6	공공용지	을지로6가 21-37	도	0.7	0.7				건설교통부
7	공공용지	23-30	도	2568.6	152.19				건설교통부
소계	11필지			705.0	249.26				
1	사유지	을지로6가 21-23	대	137.9	1.15				(주)디엠씨플래닝
2	사유지	21-24	대	141.1	38.05				(주)디엠씨플래닝
3	사유지	21-28	대	22.1	14.98				(주)디엠씨플래닝
4	사유지	21-29	대	24.1	2.43				(주)디엠씨플래닝
5	사유지	21-35	대	7.9	7.9				(주)디엠씨플래닝
6	사유지	21-36	대	6.3	6.25				(주)디엠씨플래닝
7	사유지	21-38	대	1.3	0.59				(주)디엠씨플래닝
8	사유지	21-41	대	54.2	31.36				(주)디엠씨플래닝
9	사유지	21-42	대	193.1	127.02				(주)디엠씨플래닝
10	사유지	21-43	대	17.9	16.22				(주)디엠씨플래닝
11	사유지	20-17	대	99.1	3.31				(주)디엠씨플래닝

※ 을지로6가 21-3,21-17,21-18 토지는 건물 준공 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토지

◆ 중구고시 제2006-7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서울중구공고 제2004-377호(2004.10.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제2004-70호(2004.10.30)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회현동3가 1-5~8간 외 2개소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목과(☎ 2260-4038) 건설관리과(☎ 2260-401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고시
중구 회현동3가 4-1~8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회현동 3가 1-5~8간 도로개설공사	폭 6~7m 연장 100m	당초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06.12.31	서중고 제2003-5호 (2003.01.30)
			변경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07.12.31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고시
중구 회현동1가 144-39~144-24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회현동 1가 144-39~ 144-24간 도로개설공사	폭 4m 연장 62m	당초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06.12.31	서중고 제97호 (2003.12.26)
			변경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07.12.31	
중구 남창동 205-83~205-49간	-도시계획사업(도로)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공사	폭 6m 연장 45m	당초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06.12.31	건고시 제432호 (1963.07.01)
			변경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07.12.31	

-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다. 변경내용 : 사업기간 변경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목과(☎ 2260-4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고시 제2006-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

1. 건설부고시 제560호(1963.9.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5-480(2005.12.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1(2006.1.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서계동 237의8~238의24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 710-3405) 및 건설관리과(☎ 710-3401)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동없음) : 서울특별

시 용산구 서계동 237의8~238의24간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동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서계동 237의8~238의24간 도로확장공사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동없음) :
B = 4~6m, L = 250m
- 사업시행자(변동없음)
 - 성 명 :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25번지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전) : 고시일부터~2006. 12. 31
 - (변경후) : 고시일부터~2007. 12.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동없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도협의(변경없음).

◆ 용산구고시 제2006-64호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경미한사항)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3-184호(2003.6.30)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문배지구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되고 용산구 고시 제2003-40호(2003.8.5)로 지형도면 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제27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보차혼용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710-338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보차혼용도로 : 신설
- 보차혼용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조서

구 분	기 능	위 치	폭	연 장	비 고
신 설	보차혼용도로	문배동24-33 (A블럭 구역)	4m	24m	경미한 사항

- 보차혼용도로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보차혼용 통 로	보차혼용도로 신설(폭4m, 연장24m)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에 따라 축소되는 <A블럭>의 도로일부(문배동 24-33)를 인접필지 주민의 보차혼용도로로 확보하고, 24시간 개방하는 구조로 조성하기 위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도서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 동대문구고시 제2006-124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8호(2006.10.26)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2006년 12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계획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 변경없음
- 대지내공지 : 변경없음

장안동 425-1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7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외 9필지	-	증) 5,568.5	5,568.5	-

2.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 계	5,568.5	-	5,568.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568.5	-	5,568.5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8 (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8.7	장안동 425-11	장안동 425-1	-	-	2m 확폭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임

나. 공공공지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공공공지	-	장안동 425-1 일원	-	증)362.0	362.0	-	기부채납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획지계획 결정조서

구 분	획 지 계 획			비 고	
	도면표시	위 치	면 적(m ²)		
신 설	①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일원	4,699.0	공동주택(대지)	
	②	동대문구 장안동 425-11번지	261.8		
	③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일원	소 계	245.7	도시계획도로(기부채납)
			①	220.2	
			②	25.5	
④	동대문구 장안동 425-1번지 일원	362.0	공공공지(기부채납)		
합 계	-		5,568.5	-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확정함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조서

획지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지정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188.63% 이하	-
		•상한용적률	219.00% 이하	-
	높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11층이하 •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적용 - 기준Ⅰ : 인접대지 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부분별 최고높이는 12층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를 지정하고, 13층 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이내 - 기준Ⅱ : 6m 이하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의 최고높이는 당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또는 전면 또는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 중 적은 높이 이하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공공시설면적합계	582.2m ²	-
•도시계획도로		220.2m ²		
•공공공지		362.0m ²		
②	허용용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규정된 용도	-	
	건폐율	•60% 이하	-	

획지	구 분	내 용		비 고
②	용적률	•기준용적률	200% 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한용적률	225.32% 이하	도로 25.5㎡ 기부채납
	높이제한	•7층이하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공공시설면적합계	25.5㎡	-
•도시계획도로		25.5㎡		

* 서울시 「단독주택지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2003.5.22)」변경(2004.5.10)에 따른 "용도지역별 공공용지 부담률 및 용적률 적용기준"에 의거, 공공용지부담을 통해 용적률 완화

나. 층수완화 결정조서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완 화 내 용	비 고
획지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699㎡	- 평균11층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①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적용	-

다. 용적률(가중평균) 결정

획지① 관련				
구 분	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비 고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용도지역	-	제2종(7층)		-
용 적 률	-	기준 : 180%, 상한 : 230%	기준 : 190%, 상한 : 230%	-
공공용지부담율	-	10% 이상	5% 이상	-
사업 부지	구역면적	5,281.2㎡	4,614.9㎡	-
	대지면적	4,699.0㎡	4,059.0㎡	-
기준용적률 (가중평균)	188.63% 이하	제2종(단독)면적/대지면적×180% + 제2종(공동)면적/대지면적×190% = 640.0/4,699.0×180+4,059.0/4,699.0×190 = 24.52+164.11 = 188.63% 이하		-
상 한 용 적 률	평균	230% 이하		-
	기부채납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가중치=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188.63 / 188.63 = 1) (α = 기부채납면적 / 대지면적 = 582.2 / 4,699.0 = 0.12385) = 188.63 × (1+1.3×1×0.12389) = 219.00% 이하		적용 : 평균,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중 적은값 적용 219.00% 이하
공공용지부담율 (가중평균)	5.60% 이상	제2종(단독)면적/구역면적×10% + 제2종(공동)면적/구역면적×5% = 666.3/5,281.2×10%+4,614.9/5,281.2×5% = 1.261 + 4.335 = 5.60% 이상		295.75㎡이상 (계획 : 582.2㎡)
기부채납면적	582.2㎡	26.3㎡	555.9㎡	-
기부채납비율	10.93%	582.2 / 5321.8 = 10.93% > 5.67%		-

획지② 관련				
구 분	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비 고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용도지역	-	제2종(7층)		-
용 적 륜	-	기준 : 200%, 상한 : 230%	-	-
공공용지부담율	-	-	-	-
사업 부지	구역면적	287.3㎡	287.3㎡	-
	대지면적	261.8㎡	261.8㎡	-
기준용적률 (가중평균)	200%이하	-		-
상 한 용 적 률	평균	230% 이하		-
	기부채납	$\begin{aligned}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 (\text{가중치} = \text{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 & = 200 / 200 = 1) \\ & (\alpha = \text{기부채납면적} / \text{대지면적} = 25.5 / 261.8 \\ & = 0.09740 \\ & = 200 \times (1 + 1.3 \times 1 \times 0.09740) \\ & = 225.32\% \text{ 이하} \end{aligned}$	적용 : 평균, 기부 채납 상한용적률 중 적은값 적용	225.32% 이하
공공용지부담율 (가중평균)	-	-		-
기부채납면적	25.5㎡	25.5㎡	-	-
기부채납비율	8.87%	25.5 / 287.3 = 8.87%		-
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적용기준	비 고	
건축한계선	획지① 남서측 6m 도로변	2m	- 보행공간 확보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전면공지(인도부속형)	획지① 남서측 6m 도로변 : 2m	-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인도부속형(보도)으로 조성		
다.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경사도 20%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경관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 형태 도입 권장			획지①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입면변화	-색채, 마감재 등을 이용한 저층부(5개층 이하)의 차별화 -주동출입부 캐노피, 현관문,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입구성 부여 -코어부분의 입면차별화등 저층부 피로티 등을 통해 개방감 확보	획지①
형 태	-주동형태는 시각적인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 권장	획지①

라. 교통체계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구 분
주차출입구	대상지 북동측 8m 도로변	차량진출입구 : 1개소	획지①
주차장	-지상부 장애인주차등 법적주차만 설치		획지①

마. 기타사항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구 분	조 건 사 항	조 치	비 고
2006년 제15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진출입구는 북측 1개소로 할 것	-북측 도시계획도로변 차량진출입구를 1개소 설치	획지①
	-법정 지상주차를 제외한 주차장은 지하화하여 지상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	-지상부 장애인주차 등 법적주차만 설치(4대)	획지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최소화 할 것	-북측 차량진출입구로부터 최단거리에 램프 설치	획지①
	-아파트 필로티를 이용한 차량통행은 지양 할 것	-차량통행 배제하고 보행자 전용으로 계획	획지①
	-어린이 놀이터 및 보행공간 등은 단지 남측으로 조성할 것	-어린이 놀이터를 단지남측으로 이동배치하고 단지남측부를 보행중심공간으로 조성	획지①

7. 관계도면 : 생략(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8. 주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전화 2127-494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06-126호
도시계획사업(배봉산근린공원조성) 실시
계획 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7.9)호로 도시
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484호
('78.9.18)로 지적고시 되었으며, 동대문
고시2006-45호(2006.5.9)로 기 인가되고
동대문공고2006-771(2006.11.13)호로 공
람공고 된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원녹
지과(☎ 2127-477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며, 수용 및 사용된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
수령자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
동 32-20번지 일원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배봉산근린공원조성)

다. 사업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필 지	면 적(m ²)	필 지	면 적(m ²)	
19	70,477	22	80,729	토지보상지 필지분할 및 추가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변 경 : 인가일~2010. 12. 31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 기 준 : 인가일~2007. 12. 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사업시행자주소 :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원)

(소재지 : 휘경2동)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휘경동)	지 목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지 분	지 번 (휘경동)	지 목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9필지		70,477				22필지		80,729			
43-54	임야	2,040	동대문구 휘경동 43-7	학교법인 휘경학원		43-54	임야	2,040	동대문구 휘경동 43-7	학교법인 휘경학원	
산6-77	임야	5,324	성동구 구의동 552-1	황금자	222/ 19230	산6-77	임야	5,324	성동구 구의동 552-1	황금자	222/ 19230
			미합중국펜실베이 아주16801 스테이트카리 지시블루코스트	박종욱	8075.9/ 19230				미합중국펜실베이 아주16801 스테이트카리 지시블루코스트	박종욱	8075.9/ 19230
			성동구 구의동 560-1	박종석	8075.9/ 19230				성동구 구의동 560-1	박종석	8075.9/ 19230
산6-77	임야	5,324		서울특별시	2856.2/ 19230	산6-77	임야	5,324		서울특별시	2856.2/ 19230
산6-85	임야	3,800		서울특별시		산6-85	임야	3,800		서울특별시	
산6-83	임야	4,100		서울특별시		산6-83	임야	4,100		서울특별시	
산6-81	임야	4,190		서울특별시		산6-81	임야	4,190		서울특별시	
산6-82	임야	2,400		서울특별시		산6-82	임야	2,400		서울특별시	
산6-78	임야	10,661		동대문구		산6-78	임야	10,661		동대문구	
산6-66	임야	12,810		서울특별시		산6-66	임야	12,810		서울특별시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회경동)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 분	지 번 (회경동)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43-11	임야	3,048	동대문구 회경동 43-7	학교법인 회경학원		43-11	임야	3,048	동대문구 회경동 43-7	학교법인 회경학원	
43-250	임야	1,524		서울특별시		43-250	임야	1,524		서울특별시	
산6-84	임야	3,400		서울특별시		산6-84	임야	3,400		서울특별시	
산6-52	임야	476	성동구 신당동 431-2	양문석		산6-52	임야	476	성동구 신당동 431-2	양문석	
산6-53	임야	60	미합중국텍사스주 76067미네랄월 스피오박스112	김근웅		산6-53	임야	60	미합중국텍사스주 76067미네랄월 스피오박스112	김근웅	
산6-54	임야	40	성동구 신당동 431-2	양문석		산6-54	임야	40	성동구 신당동 431-2	양문석	
산6-55	임야	66	미합중국텍사스주 76067미네랄월 스피오박스112	김근웅		산6-55	임야	66	미합중국텍사스주 76067미네랄월 스피오박스112	김근웅	
산6-87	임야	1,000	성동구 구의동 552-1	황금자		산6-87	임야	1,000		서울특별시	
			미합중국펜실베이니아주16801 스테이트카리 지시블루코스트	박종욱							
			성동구 구의동 560-1	박종석							
				서울특별시							
산6-86	임야	2,500	중랑구 묵동20 신내두산㉔ 521-1004	임금례		산6-86	임야	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0-6 그랑빌 901	홍갑유							
산6-35	임야	10,433	중랑구 묵동 20 신내두산㉔ 521-1004	임금례		산6-40	임야	2,605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7-4	지필례	
			서초구 반포동 110-6 그랑빌 901	홍갑유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7-4	송수훈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회경동)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 분	지 번 (회경동)	지목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산6-40	임야	2,605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7-4	지필례		산6-35	임야	5,216	서초구 서초동 1648-15	박한수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77-4	송수훈		산6-89	임야	5,217	서초구 서초동 1648-15	박한수	
						산6-36	임야	5,126	서초구 서초동 1648-15	박한수	
						산6-90	임야	5,126	의정부시 용현동 291-1	임금례	

◆ 동대문구고시 제2006-128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호(2000.2.9)로 용두구역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 사업계획(구역지정)결정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00-9호(2000.3.6)로 지적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82호(2002.10.31)로 사업계획(변경)결정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03-3호(2003.1.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03-35호(2003.5.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06.11.1 사업시행계획(변경)신고, 2006.12.6 준공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06-115호(2006.12.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06-121호(2006.12.7)로 공사완료 고시된 용두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및 건설교통부의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2003.12.11)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공람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동대문구청장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용두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도심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의 위치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주)페어메이트 대표이사 이용숙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51-19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연월일 :

2006.12.15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시행면적 : 4,084.30㎡

- 획지(대지)면적 : 2,966.80㎡

- 공공시설면적 : 1,117.50㎡

• 공공시설부담면적 : 504.80㎡

[도로 : 308.10㎡, 공원(주차장) : 196.70㎡]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612.70㎡(도로)
 - 건축규모 : 1개동[지상 : 18층(69.9m) / 지하 : 6층]
 - 건축면적 : 1,110.026㎡ (건폐율 : 37.41%)
 - 연 면 적 : 31,390.552㎡ (용적률 : 644.96%)
 - 용 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바. 관계도서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중랑구고시 제2006-85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중 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 나. 명칭 : 정풍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묵동 245-80호
 - 나. 면적 : 1,419.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정풍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이응준
 - 나.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묵동 245-80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6. 12. ~
-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공개공지(공개공지의 조성방법)

2008. 6.
5. 사업시행인가일 : 2006. 12. 18.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가. 대지면적 : 1,419.08㎡
 - 나. 건 폐 율 : 33.29%
 - 다. 용 적 률 : 215.20%
 - 라. 높 이 : 28.5m
 -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1층 / 지상 10층 아파트1개동 31세대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107.72㎡)
9. 설계도서 : 생략[중랑구청 주택과 ☎(02) 490-3380~3]

◆ 강북구고시 제2006-85호

미아삼거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 제2006-6호(2006. 2.9)로 변경결정된 미아삼거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롯데부지 특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68조, 동조례 부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구 분	공 개 공 지		비 고
	기 정	변 경	
내 용	○면 적 : 913.97㎡ ○시설계획 : 볼라드,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	○면 적 : 922.70㎡ ○시설계획 : 볼라드,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	증) 8.73㎡

□ 옥상녹화(수종/조경시설물의 설치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옥상바닥면적	1,126.37㎡	1,220.90㎡	증) 94.53㎡
옥상녹화면적	1,051.19㎡	1,154.47㎡	증) 103.28㎡
시설계획	벤치, 쉼터 등의 조경시설	벤치, 쉼터 등의 조경시설	

나.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북구청 균형발전추진단(901-629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고시 제2006-86호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2006-684(2006. 11.30)호로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수유5동 445-42번지의 2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규모(㎡)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근거	비고
-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수유5동 445-42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수유5동 445-42	356	서울시고시 제89호 (1972.7.11)	
	수유5동 445-47	69		
	수유5동 445-53	23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2-59)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마.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강북구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토목치수과(☎ 901-6216) 및 건설관리과(☎ 901-620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전화 901-62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의 명칭 : 수유5동 445-42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5동 445-42	대	356	3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아이 비-1305	조성도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5동 445-47	대	69	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아이 비-1305	조성도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5동 445-53	대	23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아이 비-1305	조성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의 명칭 : 수유5동 445-42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5동 445-24	건물중 담장	1식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5-24	김대길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1 (미아동 지점)	한국 주택은행	추가 근저당권	수유5동 445-42 지상소재

◆ 강북구고시 제2006-8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강북구공고 제2006-679호(2006.11.23)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미아4동 도봉로 P턴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시행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토목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연번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규 모	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비고
1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미아4동 도봉로 P턴 도로개설	미아4동 40-18~ 39-8	B=15m L=79m	강북구고시 제2006-67호 (‘06.11.16)	강북구고시 제2006-67호 (‘06.11.16)	

나.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별첨

다.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 토목치수과
(전화 901-6405)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미아4동 도봉로 P턴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신규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4동 38-26	대	7	7		미아4동 38-25	성을경					
2	미아4동 39-1	대	286	242		미아9동 95-9	박만식				미아4동 39-32	
3	미아4동 39-7	대	129	57		동대문구 전농동 10 전농SK [㉠] 102-503	임정자				미아4동 39-33	
4	미아4동 39-8	답	86	24		미아4동 39-8	최세일				미아4동 39-34(23㎡) 미아4동 39-35(1㎡)	
5	미아4동 39-9	대	172	60	1/2	번동 657 동문 [㉠] 101-502	김형운					미아4동 39-36
					1/2	번동 657 동문 [㉠] 101-502	이명수					
6	미아4동 39-27	대	25	4		미아9동 95-9	박만식				미아4동 39-37	
7	미아4동 39-28	대	266	220		미아9동 95-9	박만식				미아4동 39-36	
8	미아4동 39-29	대	195	1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4동 39-40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신규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9	미아4동 39-30	대	49	49		미아9동 95-9	박만식				
10	미아4동 40-2	대	1,067	170		수유동 130-107	박만춘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기업여신센터	근저당	미아4동 40-21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근저당	
11	미아4동 40-18	대	156	156		수유동 130-107	박만춘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기업여신센터	근저당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근저당	
12	미아4동 40-19	대	40	40		수유동 130-107	박만춘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기업여신센터	근저당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근저당	
13	미아4동 42-8	대	2,891	7		미아4동 42-8	문병옥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미아동기업 금융팀	근저당	미아4동 42-21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7-72	(주)부림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구리시 수택동 405-6	(주)남양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2-3	(주)삼신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하남시 덕풍동 415-71	(주)삼정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94-7	(주)세림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6	(주)늘푸른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18	(주)안양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대구 중구 전동 12-2	(주)유니온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신규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3	미아4동 42-8	대	2,891	7	미아4동 42-8	문병욱	인천 남구 주안동 197-20	(주)인성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미아4동 42-218	
							인천 남구 주안동 920-8	(주)인천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평택시 평택동 66-19	(주)평택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인천 남구 주안동 408-2	(주)한서 상호저축은행	근저당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1-35	인양협심 새마을금고	근저당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사

사업의 명칭 : 미아4동 도봉로 P턴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미아동 39-1	가건물		125		도봉구 쌍문동 382-98	박복만				
		가건물		59							
2	미아동 39-7	건물(지층)	철근 콘크리트	24		강북구 미아동 39-7	이종훈				
		건물(1층)		22							
		건물(2층)		23							
		건물(3층)		23							
3	미아동 39-9	건물(지층)	철근 콘크리트	29	1/2	강북구 번동 657 동문A 101-502	김형윤				
		건물(1층)		28							
		건물(2층)		28							
		건물(3층)		28	1/2	강북구 번동 657 동문A 101-502	이명수				
		건물(4층)		28							
		건물(5층)		28							
4	미아동 40-2	건물		169		성동구 옥수동 4 현대A 104-904	박광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기업여신센터	근저당	
		가건물		44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창신동지점	근저당	

◆ 노원구고시 제2006-54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005.1.31)호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5-16(2005.3.4)호로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제 2006-14호(2006.5.1)로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 인가고시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6-50(2006.11.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에 대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제 97조,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실시계획변경자. 사업개요

인가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

나. 사업기간 : 2006. 3. ~ 2010. 12. 31.

다.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사업

라. 사업규모 : 950,643㎡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 첨

사.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별 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에 의함.

사업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고
노원구 월계동 산8-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초안산근린공원)사업	○ 부지면적 : 950,643㎡ ○ 시설종류 : 휴양시설등 74개시설	2006. 3. ~ 2010.12.31.	

연 번	기 정							변 경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내용	
2	월계동 신8-2	임야	10,909	10,909	김창성 (지분1/4)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3-1		월계동 신8-9	임야	2,123	2,123	김창성 (지분1/4)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3-1					
						상동							상동					
						김주영 (지분1/4)							상동					
						김우영 (지분1/4)							상동					
3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임	4,463	4,463	최미클은	인천 남구 송의동 42-1		월계동 신8-2	임야	8,786	8,786	김수경 (지분1/4)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3-1					
						상동							상동					
						김우영 (지분1/4)							상동					
4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임	55,537	55,537	조계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김우영 (지분1/4)	변경					
						상동							변경					
5	노원구 월계동 산68번지	임	31,491	90	조계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김우영 (지분1/4)	변경					

연번	기 정							변 정							비 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성명	소 유 자 주 소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유자 성 명	소유자 주 소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신8-2	(아카시아등)			3-1										
3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베드민턴장	천막/ 파이프	4면	주민										
4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2개	노원구청										
5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철봉	철주	1개	노원구청										
6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평행봉	철주	1개	노원구청										
7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의자	목재	3개	노원구청										
8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가림막	천막/ 파이프	20㎡	노원구청										
9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표	-	7개											
10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망부석	돌	3개											
11	노원구 월계동	석상	돌	2개											

연번	기 정							변 정							비 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성명	소 유 자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이해관계인 주 소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유자 성 명	소유자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산6번지															
12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모 상석	돌	4개												
13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철조망	-	108M												
14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위몸인오키기	목재	3개												
15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매달리기	목재	1개												
16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1개												
17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오름표기	목재	1개												
18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약수터	콘크리트	1개	노원구청											
19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베드민턴장	-	2면	노원구청											
20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정자	목재	1개	노원구청											
21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배수로	석축	2X63m	노원구청											

연번	기 정							변 정							비 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성명	소 유 자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유자 성 명	소유자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이해관계인 주 소
22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화장실	판넬	2동	노원구청				변경	없음						
23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파고라	목재	3동	노원구청				변경	없음						
24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철봉	철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5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평행봉	철주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6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등의자	목재	20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7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악수터	콘크리트	1㎡	노원구청				변경	없음						
28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괄목허퍼기	철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29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포	-	3개					변경	없음						
30	노원구 월계동 산69번지	수목	-	16,100주	조세우 외 6인	용산구 이촌동 302-86			변경	없음						
31	노원구 월계동 산68번지	경자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2	노원구 월계동 산6번지	윗물안으키기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연번	기 정							변 정							비 고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내용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면적 또는 수량 (㎡)	소유자 성 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내용	
33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철골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4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허리돌리기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5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의자	목재	9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6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정자	목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7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평행봉	철재	2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38	노원구 월계동 산5번지	역기	철재	1개	노원구청				변경	없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6-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51-9호 외 1필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대문구청장

가. 결정(변경) 취지

서대문구 봉원동 52번지 일대 소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추가되는 건물을 포함하여 공원조성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 지역주민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권리명세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	비고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봉원동 51-9호 외1	104	-	저축: 건물1동 소공원조성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사업에 대해 토지 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06-1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녹지)실시계획
(변경)인가

1. 우리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5-180호(2005. 12. 29)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결정	비고
			기정	변경		
도시계획사업(도로)	홍은동 8-247~8-218호간	B = 8m L = 213m	인가일로부터 2006.12.30	인가일로부터 2007.12.30	서대문구고시 제2005-70호 (2005.05.26)	
도시계획사업(녹지)	홍은동 8-710호일대	A = 2,079m ²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조 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 양천구고시 제2006-56호

초원연립주택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양천구 신월5동 24-2외 3필지 초원연립주택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7. 분양계획

분양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상 가
	84.70㎡				
토지소유자	30				
보류시설					
일반분양	10				1,643.12㎡
임 대					
계	40				1,643.12㎡

2. 정비사업의 명칭 : 초원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신월5동 24-2외 3필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2,081.4㎡

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6. 12

6. 건축계획

○ 위 치 : 신월5동 24-2외 3필지

○ 대지면적 : 2,081.4㎡

○ 규 모 : 지하1층, 지상12층, 1동 40세대,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 6,777.19㎡

○ 건폐율/용적율 : 31.33% / 249.9%

◆ 강서구고시 제2006-10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6-1107호 (2006.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한 「방화동 180~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및 「화곡동 79-2~77-10간 도로개설공사(도로모퉁이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80~마곡동 326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 79-14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의 명칭 :

① 방화동 180~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② 화곡동 79-2~77-10간 도로개설공사 (도로모퉁이정비)

다. 사업 시행규모 :

① 도로개설, B=10m, L=500m

② 도로모퉁이정비, A=9㎡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80-16

- 성 명 : 강서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 : 별첨
 사.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토목과(☎
 2600-6409, 담당 : 이임준)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공사명 : 방화동 180~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	수 용 할 토지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강서구 방화동 176-3	도로	109	9	국 (건설부)					
2	강서구 방화동 176-2	도로	23	10	국 (건설교통부)					
3	강서구 방화동 168-115	도로	608	557	강서구					
4	강서구 방화동 758	도로	4,024	420	국 (건설교통부)					
5	강서구 방화동 180-21	도로	23	23	강서구					
6	강서구 방화동 180-17	도로	332	15	강서구					
7	강서구 방화동 180-2	도로	59	59	권이재	방화동 180				
8	강서구 방화동 180-4	도로	60	60	대한민국 (건설부)					
9	강서구 방화동 180-1	도로	89	89	대한민국 (건설부)					
10	강서구 방화동 180-23	도로	212	202	강서구					
11	강서구 방화동 180-24	도로	664	664	국 (건설교통부)					
12	강서구 방화동 180-15	도로	518	115	강서구					
13	강서구 방화동 180-27	도로	47	47	강서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수용할 토지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4	강서구 방화동 168-16	도로	143	143	강서구					
15	강서구 방화동 168-71	잡종지	6	6	박정래 윤용기	- 김포읍 사우리 산20-7 김포A 304호 - 동대문구 장안동 139-23				
16	강서구 방화동 168-75	대	78	78	서울시					
17	강서구 방화동 168-67	대	78	78	서울시					
18	강서구 방화동 168-118	도로	967	684	서울시					
19	강서구 방화동 189-32	도로	9	9	국 (건설교통부)					
20	강서구 방화동 189-31	도로	219	219	국 (건설교통부)					
21	강서구 방화동 189-2	제	612	612	국 (건설부)					
22	강서구 방화동 189-3	도로	322	322	국 (건설부)					
23	강서구 방화동 190-7	도로	161	161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24	강서구 방화동 190-2	제	235	235	대한민국 (건설부)					
25	강서구 방화동 190-6	도로	40	40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26	강서구 방화동 168-105	도로	191	43	강서구					
27	강서구 마곡동 407-13	도로	5	5	강서구					
28	강서구 마곡동 222-38	도로	19	19	강서구					
29	강서구 마곡동 222-2	도로	89	68	국 (건설부)					
30	강서구 마곡동 407	도로	35,730	202	국 (건설부)					

물 건 조 서

○ 공사명 : 방화동 180~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강서구 방화동 168-71	가건물	판넬	1식	식 당	정태남	강서구 방화1동 168-91				

영 업 권 조 서

○ 공사명 : 방화동 180~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상 호	업 종	대 표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강서구 방화동 168-71	원조수구래	음식점	정태남	강서구 방화1동 168-91호	

토 지 조 서

○ 공사명 : 화곡동 79-2~77-10간 도로개설공사(도로모퉁이 정비)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수용할 토지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강서구 화곡동 79-14	도로	9	9	장기택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55				

◆ 구로구고시 제2006-8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01호(1977.11.11)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99호(1998.7.7)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6-661호(2006.11.22)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내용으로 갈음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서울스포츠컴플렉스 조성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고척동
63-6번지 외 10필지

다. 사업규모

- 실내시설(16,795㎡), 실외시설(17,64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

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
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사 업 의 명 칭 : 서울스포츠컴플렉스 조성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 고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고척동 63-18	도로	149	도로	서울 특별시					
2	고척동 63-19	도로	1,117	도로	서울 특별시					
3	고척동 63-20	도로	133	도로	건설 교통부					
4	고척동 277-9	하천	1,566	하천	건설 교통부					
5	고척동 63-6	잡종지	9,167	잡종지	(주) 해덕기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개울 2-805	(주)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개봉지점)	근저당권	
6	고척동 66-2	잡종지	23,898	잡종지	(주) 해덕기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개울 2-805	(주)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구로중앙기업금융)	근저당권	
7	고척동 279-2	유지	427	유지	(주) 해덕기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개울 2-805				
8	고척동 279-4	유지	1,169	유지	(주) 해덕기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개울 2-805				20971분의 10082.211539
					이금룡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A 105-1303				20971분의 5041.105769
					박관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39 연희대우A 107-102				20971분의 343.577458
					박원용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8 신도1차A 104-1003				20971분의 2,550.408386
					박원용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장미A 607-504				20971분의 2,550.408386
9	구로동 631-1	잡종지	809	잡종지	이명래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목동신시가지A 928-1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 고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구로동 631	잡종지	17,112	잡종지	(주) 해덕기업	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1 아이티개솔 2-805				20971분의 3262.743161
					이금룡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복련A 105-1303				20971분의 8,854.12849
					박관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39 연희대우A 107-102				20971분의 559.013202
					박원용	서울 노원구 공릉동 748 신도1차A 104-1003				20971분의 4,147.5575609
					박원용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3 장미A 104-504				20971분의 4,147.5575609
11	고척동 71-2	잡종지	1,714	잡종지	민옥련	서울 마포구 신수동 450 신촌삼익A 102-2001	농협협동 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서여의도지점)	근저당권	
	합 계		57,261							

◆ 구로구고시 제2006-83호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 고시된 구

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의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사업시행기간연장)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 구 명	위 치	면적(㎡)	지구지정고시	최초개선계획고시
구로2동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17번지 일대	8,306	'98. 4. 22 서울시고시 제1998-137호	'98. 9. 17 구로구고시 제1998-125호
구로3동1-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80번지 일대	65,191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92. 12. 30 서울시고시 제458호
구로3동2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52번지 일대	9,557	'90. 8. 20 건설부고시 제517호	'91. 8. 9 서울시고시 제248호
구로3동3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55번지 일대	9,043	'89. 12. 30 건설부고시 제808호	'91. 1. 3 서울시고시 제435호
구로4동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38번지 일대	94,686	'90. 12. 22 건설부고시 제936호	'92. 11. 2 서울시고시 제347호

지 구 명	위 치	면적(m ²)	지구지정고시	최초개선계획고시
구로6동1지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13-33번지 일대	2,879	'99. 12. 15 서울시고시 제1999-404호	2000. 4. 29 구로구고시 제2000-43호
가리봉2동1지구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25번지 일대	8,901.7	'99. 12. 15 서울시고시 제1999-404호	2002. 2. 25 구로구고시 제2002-16호

나.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단,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령 별표2의 제3호 사업(건축물개량)은 주민]

다.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연장

- 변경전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6. 12. 31.까지
- 변경후 :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일로부터 2007. 12. 31.까지

라. 변경사유 : 개선계획에 의한 손실보상 일부 미협외,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건축물개량 미완료

마.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02-860-29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강남구고시 제2006-88호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대치도곡제2차(아) 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도곡제2차(아) 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대치동 888번지
4. 정비구역의 면적 : 38,741.50m²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치도곡제2차(아) 재건축조합 조합장 최재곤
현대산업개발(주) 대표 김정중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23-25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0
7.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4. 3. ~ 2007. 10.
8. 사업시행인가일 : 2003. 6. 26.
9.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36,824.10m²
 - 나. 건 폐 율 : 14.40%
 - 다. 용 적 률 : 274.942%
 - 라. 높 이 : 69.3 m
 - 마. 용 도 : 아파트 11개동 76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규 모 : 지하2층, 지상18~25층, 연면적 148,891.85m²
10. 사업의 변경 사유 :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11. 주요 변경내용
 - 연면적 234.4m² 증가(아파트 : 지하1층 중앙공급실 복도설치로 인한 면적 87.36m² 증가, 주구중심 : 147.04m² 증가)
 - 주구중심 평면변경 및 용적률 0.536% (건축면적:0.06m²)증가
 - 단위세대(전체) 발코니 확장
 - 정화조 위치 변경 등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 사항
13. 기타 승인 조건 및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 보관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06-652호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구역 지정
2006년 12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1차 위원회)에서 자연경관지구내 건축

제한 완화구역으로 심의 결정된 우리 구 청
운동 12-4외 5필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조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
축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종 로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자연경관지구)건축제한 완화구역 지정조사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완 화 내 용	비 고
경관지구 (인왕지구)	자연경관 지 구	종로구 청운동 12-4외 5필지	567.2	3층12m이하→4층16m이하	청운동(12-2, 12-3, 12-4, 12-5, 12-15, 12-16)

- 나. 공고 및 열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731-1419)
- 다.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제4항
- 라. 시행일 : 공고일부터
- 마. 관련도서 : 생략(공고 및 열람장소에 비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는 개별통지할 것이며,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 용산구공고 2006-550호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9호(1993.3.19) 및 용산구고시 제2006-56호(2006.11.16.)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1호(2004.12.27)로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호 일대 학교법인 숙명학원 건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 2) 명 칭 : 숙명여자대학교 건설사업

나.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호외 20필지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용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호

라. 사업기간 : 2001. 1.~2008. 12. 31.

마. 열람기간 : 2006.12.22.~2007.1.10.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바.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사업면적 (㎡)	시 설 계 획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층 수 (지하/지상)	기 타	
당 초	79,120.6	23,839.55 (30.13%)	191,925.02㎡ (160.93%)	3/10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주민보행통로, 공원조성, 주차장, 백주년기념관 신축, 학생회관·르네상스프라자(연주홀)·지하주차장·서관·도서관·대학원관 증축, 생물자원보존실·약대수위실·도서관·과학관 증축 및 변경	
변 경	79,111.6	23,825.95 (30.12%)	197,126.86㎡ (163.98%)	3/10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주민보행통로, 공원조성, 주차장, 백주년기념관 신축, 학생회관·르네상스프라자(연주홀)·지하주차장·서관·도서관·대학원관 증축, 생물자원보존실·약대수위실·도서관·과학관 증축 및 변경, 기숙사 증축	
증·감	-	13.6㎡ (감 0.01%)	5,201.84㎡ (증 3.05%)	-	기숙사 증축	

사.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자.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용산구공고 제2006-551호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허가 제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재개발 및 재건축 검토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 건축행위제한으로 향후 선량한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제한 목적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검토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 향후 선량한 다수 주민의 권익보호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효력발생) 전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함.

다. 건축허가 제한기간

○ 공고일로부터 2년(2006. 12. 21. ~ 2008. 12. 20.)

※ 다만, 건축허가제한 기간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라.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위 치	면 적(m ²)	개발방식	비 고
1	동자동 19-28번지일대	59,577	주택재개발	신 규
2	후암동 142-4번지일대	88,775	재건축	추가면적임(당초 : 150,555m ²)
3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31,623	주택재개발	신 규
4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81,196	도심재개발	신 규
5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10,155	재건축	추가면적임(당초 : 14,934m ²)
6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6,470	주택재개발	신 규
7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7,493	재건축	추가면적임(당초 : 13,173m ²)

※ 당초 : 2차 재건축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건축허가제한됨.

※ 제한구역 : 도면별첨 【용산구청 도시정비과(02-710-3385)에 비치】

마. 건축허가 제한내용

- 가)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나)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
- 다)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
- 라)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성북구공고 제2006-8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3-41호(2003.3.28)로 지형도면승인 되어, 성북구고시 제2004-153호(2004.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성북구고시 제2005-121호(2005.12.22) 및 성북구고시 제2006-6호(2006.1.19), 성북구고시 제2006-116호(2006.12.7)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하월곡동 88-16~88-389호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에 앞서,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920-3405)에 비치하여 공고일 익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오니, 본 사업의 변경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관계인은 의견서를 열람공고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1일

성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변경 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 다. 사업의 규모 : 변경 없음
-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7. 12. 31일 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 별첨
[변경 내용 : 사업 구간내 토지 및 물건 일부 변경(면적 축소), 일부 추가]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보문로 168

○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88-16~88-389간 도로확장공사(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구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추가)	하월곡동 88-1031 (88-764)	도로	10	10		성북구				
2	변경 (추가)	" 88-1032 (88-913)	대	27	27	성북구 길음동 945	이영용				
3	당초	" 88-1026 (88-87)	대	68	68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 107동 611호	윤선자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09동 202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 107동 611호 "	김혜영	근저당권	
	변경	" 88-1033 (88-1026)	대	49	49				김경화 김종욱		
4	당초	" 88-1027 (88-81)	대	115	115	성북구 하월곡동 88-81	한내교				
	변경	" 88-1034 (88-1027)	대	89	89						
5	당초	" 88-1028 (88-759)	대	91	91	경남 창원시 상남동 65-21 동방아파트5동 301호, 육성 (현 거주지 : 강남구 대치동 927-2 401호)					
	변경	" 88-1035 (88-1028)	대	48	48						
6	당초	" 88-812	대	21	21						
	변경	" 88-1036 (88-812)	대	9	9						
7	변경 (추가)	" 88-1037 (88-760)	대	18	18	성북구 하월곡동 88-777, 서대문구 홍제동 453 무악청구 [㉠] 105-1405, 성북구 길음동 486-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5 호수마을 407-403,		전건영 최준근 이영애 노웅섭			
8	당초	" 88-820	대	8	8	성북구 하월곡동 88-129	김호숙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근저당권	
	변경	" 88-1038 (88-820)	대	3	3						
9	당초	" 88-1029 (88-129)	대	106	106						
	변경	" 88-1039 (88-1029)	대	57	57						

※ 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추가) 외의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내용은 당초 인가한 내용과 같습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시행자주소 : 성북구 보문로 168

○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88-16~88-389간 도로확장공사(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토지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당초	하월곡동 88-87	주택	목조 기와	46(1층)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 107동 611호	윤선자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09동 202호	김혜영	근저당권	
	변경	" 88-87 (88-1033)			33(1층)				"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 107동 611호 "		
2	당초	" 88-81	주택 지장물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천막	119(1층) 119(2층) 92(3층) 4(천막)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성북구 하월곡동 88-81	한내교				
	변경	" 88-81 (88-1034)			84(1층) 84(2층) 73(3층) 4(천막)							
3	당초	" 88-759	주택 지장물	연외조 세멘기와 기타	83(1층) 64(2층) 담장1식 대문1식 정화조1식 계단1식	주택 근린 생활 시설	경남 창원시 상남동 65-21 동방아파트5동 301호, 육성 (현 거주지 : 강남구 대치동 927-2 401호)					
	변경	" 88-759 (88-1035)			50(1층) 48(2층)							
4	당초	" 88-129	주택 지장물	연외조 세멘기와 천막 기타	87(1층) 73(2층) 3(천막) 담장1식 계단1식 정화조1식 계량기1식 화단및 수목1식	주택 근린 생활 시설	성북구 하월곡동 88-129	김호숙	중구 태평로2가 120	주식회사 신한은행 (강남중앙 지점)	근저당권	
	변경	" 88-129 (88-1039)			54(1층) 49(2층) 3(천막)							

※ 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변경, 추가) 외의 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내용은 당초 인가한 내용과 같습니다.

◆ 노원구공고 제2006-568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신청에따른서류공람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외
43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건축
법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
가)가 요청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
라 서류의 공람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외 43필지
(공릉동 172-1, 172-3, 172-15, 172-
18, 172-19, 172-20, 172-21, 172-22,
184, 185, 186-1, 187, 189, 191-1,
208-1, 436, 436-1, 436-2, 436-3,
436-5, 440-31, 451-1, 451-2, 457,
458-2, 465-1, 465-2, 465-3, 465-4,
478-4, 478-9, 478-10, 478-11, 184
-1, 하계동 78-1, 78-11, 78-12, 95-1,
95-6, 95-9, 95-10, 95-13, 95-1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나) 사업의 명칭 : 서울산업대학교 제3기
숙사 외 1개동 증축공사
3. 사업시행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210,918.29㎡
나) 사업내역 :
- 변경전
• 기존규모 : 본관동 외 건축물 39개동,
연면적 173,237.04㎡
- 변경후
• 건축협의 : 금회분 2개동 증축
- 제3기숙사(별동 신설) : 지상12층/
지하1층, 연면적 24,453.49㎡
- 다목적강의동(별동 신설) : 지상10층/
지하1층 연면적 13,227.76㎡ 증축
• 계 : 42개동, 연면적 210,918.2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년월일 : 협의일(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준공예정일 : 2008. 12. 30.

6.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
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생략

8. 공람공고 기간 : 2006. 12. 14~2007.
01. 02.

※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 950-3908)
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공람 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양천구공고 제2006-624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사완료(목동중
심축 제2-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1.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1-48호(2001.
7.18), 제2001-98호(2001.12.27), 제
2002-10호(2002.2.7), 2002-67호(2002.
9.14) 및 2002-72호(2002.10.10) 및
2006-17(2006.5.16), 2006-46(2006.
11.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양천구
목동 405 및 408번지 일대 도시계획사
업(목동중심축 제2-1구역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법률 5453호 도
시계획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준공검사하고, 동법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양천구청 도시주택과(전화 2650-338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양천구 목동 405 및 408
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 명 칭 : 목동중심축 제2-1구역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 28,616.6㎡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8호
유니코빌딩 6층

- 시행자 : (주)코리아원 홍영태, 변재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2.10.2.~2006.12.30

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4,727㎡

사. 관계도서 : 양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주
택과 비치도서와 같음.

◆ 송파구공고 제2006-971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우리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
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
여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 410
-33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 행 기 간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3단계(6년차이후)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계	4,620	4	6,160							4,620	4	6,160
도로	4,620	4	6,160							4,620	4	6,160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별	위 치 (사업명)	우선 순위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백만원)						단계별
				폭 (m)	연장 (m)	면적 (㎡)	총계	국비	지 방 비			민 간	
									계	시비	구비		
도로총계						6,160	4,620		4,620		4,620		
소로2류	풍납동 313-6~324-26		2012이후	6~8	390	2,730	1,360		1,360		1,360		3단계
소로3류	풍납동 306-3~269-3		2012이후	6~8	236	1,652	1,650		1,650		1,650		3단계
소로3류	거여동 225-126~266-28		2012이후	4	82	328	160		160		160		3단계
소로1류	거여동 187-91~173-4		2012이후	10	145	1,450	1,450		1,450		1,450		3단계

사업소고시

-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2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서울시강동구 성내동 547번지 미주상가2층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64-2번지선 한강	선박1척 (28㎡)	공사용선박 대기장소	2006. 12. 21.~ 2007. 03. 20.	2006. 12. .

-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2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124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4척 (기선1척, 부선1척, 보트2척)	잠실수중보 세굴방지공사 선박운항	2006. 12. 12.~ 2007. 5. 6.	2006. 12. .

-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2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한강일상유지 (성산대교) 보수공사 선박운항	2006. 12. 13.~ 2006. 12. 30.	2006. 12. .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2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허가기간	허가 받은자	
					주 소	성 명
2006.12.11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1~ 망원 지구 둔치	하천	1,350	2006.12.08~ 2007.01.16	서울 마포구 당인동 1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2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124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1척 (부선1척)	잠실수중보 세굴방지공사 선박운항	2006. 12. 18.~ 2007. 5. 6.	2006. 12. .

◆ 한강시민공원사업소고시 제2006-209호
하천점용허가 승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허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허가기간	허가받은자	
					주 소	성 명
2006. 12.11	잠실대교 직하류 잠실수중보 북단 둔치(뚝섬지구)	하천	3,100	2006.12.12~ 2007.05.06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길 544	서울시한강시민공원 사업소(치수과)

사업소공고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6-30호

소방시설업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구로소방서장

- 등록일자 : 2006. 12. 14
- 등록번호 : 제구로2006-25호
- 업 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상 호 : 株式會社 信昌電氣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홍 성 수(590719-1*****)
- 영업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0-8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6-31호

방염처리업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구로소방서장

- 등록일자 : 2006. 12. 14
- 등록번호 : 제구로2006-4호
- 업 종 : 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
- 상 호 : 에스더전자(주)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김 명 화(620119-2*****)
- 영업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513, 514호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6-17호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영등포소방서장

연번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 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자
1	제영등포 2006-3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온누리방염	최 성 덕 (570218-1*****)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2 2층(☎ 02-2675-4119)	2006. 12.15.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6-60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송파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등급 및 분야)	상 호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송파 2006-30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티마이엔씨	이 종 결 (110111-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81-2 현대빌딩 3층	2006.12.12
<p>※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바랍니다.</p>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66-1번지, 66-2번지
 - 면 적 : 39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청사 부속건물 설치
 - 개 요 : 가설건축물 신축
5. 점용기간 : 2006.11.27~2011.11.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6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내
 - 면 적 : 13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포토존 및 포토데크 설치
- 개 요
 - 점토블록 포장 L=1,345m, 사고석 포장 L=38m
 - 데크설치 L=35m(3개소)

5. 점용기간 : 2006.11.27~2011.11.2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6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서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6동 319-15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번지선
 - 면 적 : 1,0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현장사무실 및 자재보관창고 설치
 - 개 요 : 현장사무소 2동, 자재보관창고 2동
5. 점용기간 : 2007.01.01~2007.12.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26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C&한강랜드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번지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선
 - 면 적
 - 서울 제220-4호 : 7,438.32㎡(여의도 2,980.16㎡, 잠실 4,458.16㎡)
 - 서울 제221-4호 : 6,959.78㎡(여의도 4,019.98㎡, 잠실 2,939.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선착장 부대시설 설치
 - 개 요
 - 여의도 : 가로등 2.7㎡, 주차장 6,978㎡, 매표소 19.44㎡
 - 잠실 : 가로등 2.522㎡, 주차장 7,376㎡, 매표소 19.44㎡
5. 점용기간 : 2007.02.27~2012.02.26

정 정

- 2006.12.14일자 시보에 게재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구고시 제2006-80호)와 관련하여 고시일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함.

변경 전	변경 후
2006.12.7	2006.12.14

- 2006.12.14일자 시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06-1846호)”와 관련하여 공고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함.

변경 전	변경 후
제1846호	제2006-1846호